

고용보험동향

I. 고용보험 적용현황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

가. 개요

1999년 12월 31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수는 약 601천개이며, 피보험자수는 6,054천명이다¹⁾. 같은 시점에서 총취업자수가 20,614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13,024천명²⁾, 적용대상근로자수³⁾는 9,243천명이므로, 총취업자의 29.4%, 임금근로자의 46.5%, 적용대상근로자의 65.5%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

[그림 1]은 취업자수 및 임금근로자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보험(실업급여)이 적용되던 1997년 말까지 총취업자 대비 20%대, 임금근로자 대비 32%대에서 머물던 것이 10인 이상, 5인 이상으로 확대된 1998년 상반기에는 각각 23.8%, 39.4%로 증가하였고, 전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된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에도 급등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1999년 하반기로 오면서 적용확대 속도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속도의 둔화는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률이 아직 높지 않기 때문이며, 지속적인 가입확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노동이동과 사업장 성립·소멸이 잦은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한 제도적 틀이 아직 완비되지 못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 본 절에서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자료의 출처는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통계월보』, 각월'이다.
- 2) 통계청, 『1999년 12월 고용동향』, 2000. 1.
- 3)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는데,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일용직 등 적용이 제외되거나 피보험자관리가 되지 않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도출한 숫자이다. 즉, 제도상에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범위의 근로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상 아주 엄밀하게 도출된 숫자는 아니다. 또한 이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았다. (적용대상근로자) = (임금근로자) - (산업대분류상에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 (공무원연금 피보험자) - (사학연금 피보험자) - (1월 미만 일용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 (1주 18시간 미만 근로자).
- 4) 1개월 미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사업에서 제외되고 피보험자관리도 되지 않고 있지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대상이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적용대상근로자를 추산할 때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해서는 안되며, 이렇게 본다면 그로부터 도출된 65.5%를 적용대상근로자 중 적용비율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림 1] 취업자수 및 임금근로자수 대비 피보험자수 추이

[그림 2] 고용보험 적용상황 추이

〈표 1〉에서 1999년 하반기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의 변동내역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년동기인 1998년 하반기 400천개와 5,268명에 비해 사업장수는 50.3%, 피보험자수는 14.9% 증가하였다. 또한 전반기인 1999년 상반기와 비교해 보

면 사업장수는 5.4%, 피보험자수는 3.6% 증가하였다. 이를 1999년 상반기에 1998년 하반기 대비 각각 43%, 11%로 증가했던 것에 비교해 보면 적용확대 속도가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장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1998년 하

〈표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변동내역

(단위 : 개소, 명, %)

구 분	1995년	1996년	1996년	1997년	1997년	1998년	1998년	1999년	1999년	1999년	전년대비 증감률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사업장	기간말 현재 (전기대비증감률)	38,953	41,764 (7.2)	43,723 (4.7)	46,300 (2.4)	47,427 (2.4)	140,200 (195.6)	400,000 (185.3)	570,748 (42.7)	601,394 (5.4)	50.3
	성 립	-	-	3,797	5,138	3,789	96,577	257,820	187,041	53,555	-
	소 멸	-	-	1,699	2,530	2,675	3,247	5,429	12,619	21,335	-
	기간내 순증감	38,953	2,811	2,098	2,608	1,114	93,330	252,328	174,422	30,646	-
피보험자	기간말 현재 (전기대비증감률)	4,204,158	4,300,725 (2.3)	4,330,885 (0.7)	4,325,940 (-0.1)	4,280,430 (-1.1)	4,796,775 (12.1)	5,267,658 (9.8)	5,844,018 (10.9)	6,054,479 (3.6)	14.9
	취 득	-	-	677,429	726,204	619,027	1,541,241	1,445,412	1,773,275	1,557,078	-
	상 실	-	-	666,909	730,915	661,627	71,016,431	967,257	1,176,637	1,553,194	-
	기간내 순증감	4,024,158	96,567	10,520	-4,711	-42,600	524,810	478,155	596,638	210,461	-

주 : 실업급여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이 1997년 말까지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나 1998년 1월 1일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1998년 3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동년 10월 1일부터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장수 및 피보험자수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자료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통계월보』, 각월·경기(7.9%)에서, 산업별로는 건설업(9.5%)

반기에 전규모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 이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독려에 따라 1998년 하반기에는 258천개가 신규로 성립되고, 1999년 상반기에는 187천개가 가입한 반면, 공공근로 사업을 통한 고용보험 홍보와 가입확대 노력이 일단락된 1999년 하반기에는 54천개가 신규가입하는 데에 그쳤다. 소멸된 사업장은 1998년 하반기에 5,429개, 1999년 상반기에 12,619개, 1999년 하반기에는 21,335개로 나타났다. 1999년 하반기의 사업장수 순증가는 대개 지역별로는 광주(9.2%),

및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8.0%)에서, 사업장규모별로는 건설공사(15.2%), 5인 미만(6.6%), 5~9인(5.6%) 규모에서 크게 나타났다. 사업장수의 순감소는 지역·산업별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업장규모별로는 10인 이상 전규모에서 나타났다(규모별 사업장 변동내역의 세부사항은 부표 3 참조).

한편 피보험자 변동내역을 보면, 10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잇따라 적용확대된 1998년 상반기 이후 노동이동이 활발한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취득·상실자수가 1997년 하반기 대비 각각 149%,

54% 증가한 150만명대와 100만명대로 증가하였다. 1999년 하반기에는 1,557천명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1,553천명이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여 동 기간 내 210천명의 피보험자가 순증가하였다. 이 중 남자는 125천명, 여자는 85천명이다.

1999년 하반기의 피보험자수 순증가는 경기(4.5%)와 서울(4.3%)에서, 산업별로는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7.6%) 기타 공공 및 사회서비스업(4.4%)에서, 사업장 규모별로는 5~9인(11.1%), 5인 미만(8.2%)에서,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8.9%)에서 크게 나타났다. 피보험자수 순감소는 지역별로는 충북(-0.9%)에서, 산업별로는 농·수렵업 및 임업(-2.2%)과 광업(-0.7%)에서, 직종별로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3.7%)와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1.5%)에서 나타났다. 사업장규모별로는 피보험자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지역별 고용보험 적용현황

[그림 3]에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에 28%(171천개), 경기도에 17%(100천개)가 분포해 있어 두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피보험자수 역시 서울에 36%(2,158천명), 경기도에 17%(1,009천명)가 편중 분포되어 있다. 사업장당 평균 피보험자수를 보면, 울산(16명) 및 서울(13명)에 소재한 사업장의 평균 피보험자 규모가 전체 평균인 10명 이상으로 나타나 이 곳에 비교적 큰 규모의 적용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원(6명), 제주(6명)에 소규모 적용사업장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산업별 고용보험 적용현황

〈표 2〉를 통해 산업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분포 추이를 보면, 1995년 하반기에 제조업이 48%(17천개), 건설업이 20%(7천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리

[그림 3] 지역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분포(1999. 12. 31. 현재)

한 경향은 1997년 말까지 유지되다가 1998년 소규모 사업장으로의 적용확대와 이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급속한 유입과 더불어 1998년 말 제조업이 30%(97천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28%(92천개), 건설업이 15%(49천개)의 비중 순으로 바뀌고, 1999년 하반기를 보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30%(150천개), 제조업 28%(138천개), 건설업 14%(68천개),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12%(59천개)의 비중을 차지해 있었다.

[그림 4]에 나타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25%, 제조업에 23%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기에 비해 사업장수의 증가율이 비교적 큰 산업은 건설

해 1999년 하반기에 신규성립한⁵⁾ 사업장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표 2 참조), 건설현장 사업장이 있는 건설공사에서 가장 많은 6,970개소의 사업장이 새로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성립되었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5,253개소), 제조업(4,959개소),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3,777개소)의 순으로 성립하였다. 가장 저조한 산업은 광업(33개소),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43개소)과 농수림어업(53개소) 순이었다(기타 산업은 제외).

한편 피보험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41%,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2.4%,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1% 순으로 나타났다. <부표 2>를 보면, 1999년 하반기는 전반기에 비해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7.6%)의 증가율

<표 2> 산업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 분포(1999년 하반기)

(단위 : 개, %)

산업	전체	농수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	숙박 및 음식점	운수·창고 및 통신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기타공공·사회개인 서비스	교육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건설공사	기타 산업
사업장수	28,942	53	33	4,959	34	2,146	5,253	2,013	771	212	3,777	1,226	828	648	6,970	19
비율	100	0.2	0.1	17.1	0.1	7.4	18.2	7.0	2.7	0.7	13.1	4.2	2.9	2.2	24.1	0.1

자료 : 고용보험 DB.

업(9.5%),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8.0%)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DB를 통

5) 보험성립일 기준이기 때문에 처리일 기준인 『고용보험통계월보』의 수치와는 다를 수 있다. 전규모 사업장으로의 적용확대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보험성립일 기준이라는 것의 의미는 적용제외 규정이 풀려 새로이 적용사업장이 되었거나 신규로 사업이 성립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 된다.

〔그림 4〕 산업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분포(1999. 12. 31. 현재)

이 큰데 반해, 농업, 수렵업 및 임업(-2.2%), 광업(-0.7%)은 감소세를 보였다.

사업장당 평균 피보험자수를 살펴보면,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과 금융 및 보험업이 각각 72명과 50명으로 사업장당 평균 피보험자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3명), 교육서비스업(3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4명) 등은 사업장당 피보험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사업장규모별 고용보험 적용현황

〔그림 5〕에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5인 미만 규모에 67%(405천개), 5~9인 규모에 13%(79천개)가 분포해 80%의 사업장이 10인 미만 규모임을 알 수 있으며, 건설공사에는 5%(27천개)가 분포하고 있다(부표 3 참조). 전반기에 비해 5인 미만 6.6%, 5~9인 5.6%, 건설공사에서는 15.2%가 늘었고, 나머

(그림 5) 사업장규모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분포(1999. 12. 31. 현재)

지 규모에서는 1,000인 이상 규모에서 -7.2%로 가장 많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감소세가 나타났다.

피보험자의 사업장규모별 분포를 보면,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18.7%(1,132천명), 10~29인 규모에 15.0%(910천명)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기에 비해 5~9인 규모(11.1%), 건설공사(10.6%) 사업장에서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상반기에 전반기 대비 건설공사 99%, 5인 미만 87%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용확대 속도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장당 피보험자수를 보면,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평균 피보험자수는 2,132명이고, 5인 미만은 2명, 건설공사는 4명, 전사업장 평균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 연령계층별 피보험자 현황

[그림 6]에서 보듯이 연령별 남녀 피보험자 전체의 분포는 25~29세 22%(1,318천명), 30~34세 18.4%(1,115천명), 35~39세 16%(938천명), 20~24세 12%(747천명)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부표 5 참조). 전반기의 피보험자수와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컸던 연령계층은 60세 이상(12.7%)과 45~49세(6.6%) 계층이었다.

남자의 경우 25~39세 계층에 61%가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여자의 경우 20~29세 계층에 52%가 집중되어 있다. 남자의 경우 30~34세(22%), 25~29세(21%) 연령계층에서의 증가율이 비교적 높았던 것에 비해, 여자의 경우 20~24세(28%), 25~29세(24%) 연령계층에서의 증가율이 높았다.

[그림 6] 연령계층별 피보험자 분포(1999. 12. 31. 현재)

남녀의 성비는 70.0 대 30.0으로 전반기의 70.4 대 29.6, 전년동기의 71.5 대 28.5에 비해 계속해서 여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혼여성이 도소매 또는 음식·숙박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24세 이하 연령계층에서는 여자의 비율이 높고 25세 이상 연령계층에서는 남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바. 직종별 피보험자 현황

[그림 7]에서 보듯이 전체 피보험자는 사무직원에 29%(1,709천명), 기능원 및 관

련기능근로자에 22%(1,297천명), 단순노무직 근로자에 14%(750천명)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전반기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서비스·판매근로자(10%), 단순노무직 근로자(14%) 집단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부표 6 참조).

남자의 경우 사무직에 26%(1,090천명),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에 25%(1,048천명), 기술공 및 준전문가에 12%(519천명) 순으로 분포하고 있고, 여자의 경우는 사무직에 37%(680천명), 단순노무직 근로자에 19%(338천명),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에 15%(272천명)가 분포하고 있다. 전반기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남자는 단순노

[그림 7] 직종별 피보험자 분포(1999. 12. 31. 현재)

무직 근로자(9%), 기술공 및 준전문가(5%)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여자는 기계장치조작원 및 조립원(14%), 단순노무직 근로자(9%)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직종별 남자 대 여자 비율은 전직종에서 남자의 비율이 높으며, 단순노무직 근로자(59 대 41)와 서비스·판매근로자(59 대 41), 사무직(62 대 38), 전문가(69 대 31)에서만 평균 남자 대 여자의 비율(70 대 30)을 볼 때 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의 직종에서는 남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장기근속과 고학력이 요구되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94 대 6)와 작업에 많은 힘이 요구되는 농업이나 여성의

종사가 금기시되는 어업숙련근로자(91 대 9)에서 남자에게 편중되어 나타났다.

사. 학력별 피보험자 현황

[그림 8]에서 보듯이 피보험자는 고졸 계층에 54%(3,272천명), 대졸 계층에 20%(1,206천명), 전문대졸 계층에 11%(688천명)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 피보험자의 74%가 고졸과 대졸 계층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표 7 참조). 전반기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문대졸(6%), 대졸(4%) 계층에서 피보험자수 증가율이 높았다.

〔그림 8〕 학력별 피보험자 분포(1999. 12. 31. 현재)

남자 피보험자는 고졸(53%, 2,239천명) 및 대졸(23%, 990천명) 계층에 76%가 분포하고 있는데 비해, 여자 피보험자는 고졸(57%, 1,032천명), 전문대졸(14%, 255천명), 대졸(12%, 216천명), 중졸(10%, 189천명) 순으로 분포해 있다. 전반기 대비 증감률은 남자의 경우 전문대졸(5%)과 대졸(3%)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여자의 경우도 대졸(9%), 전문대졸(8%)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초졸의 경우는 남녀 모두 감소했다(각각 -2.8, -1.2%).

학력별 남자 대 여자 비율은 초졸 계층(47 대 53)에서만 유일하게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고, 전문대졸 계층 이하의 학력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평균 성비에 비해 높고, 대졸 이상의 학력 계층에서는 남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분석⁶⁾

가. 개 요

〔그림 9〕에서 1996년 상반기부터 1999년 하반기까지의 취득률⁷⁾을 보면, 대략 20%에서 출발하여 1997년 하반기에 11.6%까지 떨어졌다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6) 1999년 7~12월 사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된 총 1,548,750명 중 실제로 7~12월 사이의 취득자 1,190,545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고용보험통계월보』상의 취득자수와의 차이는 『고용보험통계월보』의 수치가 취득신고를 받아 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인 반면(실제 취득일로부터 14일 내 신고), 분석에 사용한 고용보험 DB는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취득신고의 처리가 지연된다든지, 적용확대 시기에 이미 적용대상이었으나 늦게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적용확대일이 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상당한 수치상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7) 취득률은 전기의 피보험자수로 이번 기의 취득자수를 나누어 계산했다.

(그림 9) 취득률 추이

된 1998년 상반기에 31%로 치솟고, 1998년 하반기에 1인 이상 전규모로 확대된 영향과 경기상승의 여파로 1999년 상반기 33.4%의 가장 높은 취득률을 보였다. 1999년 하반기가 되어 취득률이 20.2%로 떨어

지는데, 이 시기에도 경기상승이 지속된 점을 생각해 보면, 적용확대 속도가 둔화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1999년 하반기 취득률 분포를 자세히 분석하면(표 3 참조), 1999년 하반기에 가장

〈표 3〉 산업별 및 규모별 취득률 분포(1999년 하반기)

(단위: %)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전체
전체	18.5	32.3	28.7	24.3	19.3	13.4	12.3	8.2	19.5
농수림어업	29.8	32.3	24.3	12.4	29.7	16.6	5.9	0.0	22.4
광업	18.5	21.8	20.8	14.8	5.2	0.0	2.1	4.7	11.5
제조업	21.0	32.7	30.8	25.7	20.1	13.0	11.0	6.1	19.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70.2	32.6	24.5	9.2	8.7	1.2	1.3	1.0	6.5
건설업	32.4	35.3	26.4	20.9	14.3	3.5	4.5	5.2	21.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5.8	27.5	25.7	25.8	21.0	20.6	23.6	14.0	20.7
숙박 및 음식점업	8.3	18.1	31.6	29.4	28.4	21.1	17.1	11.8	15.6
운수·창고 및 통신업	24.5	34.9	26.0	20.0	17.0	9.5	9.3	4.5	15.7
금융 및 보험업	17.3	14.1	10.5	9.2	7.4	15.0	10.4	6.1	7.9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31.2	46.0	36.6	31.5	29.3	23.3	28.7	31.3	33.0
교육서비스업	10.3	14.6	22.3	21.8	19.9	9.5	15.2	18.2	14.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9	17.9	21.8	21.9	14.9	9.4	6.4	5.3	14.2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5.3	28.6	26.3	17.8	14.4	22.1	7.3	3.2	16.6
기타 산업	18.2	20.5	15.6	6.0	7.1	4.4	2.8	8.2	6.5

자료 : 고용보험 DB.

취득률이 높은 규모는 5~9인이며, 산업별로는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평균 19.5%⁸⁾를 기준으로 볼 때, 100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보다 못한 취득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이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을 볼 때,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이동이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높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취득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1999년 하반기의 취득률이 전반기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9년 상반기 취득률이 5인 미만 130.1%, 5~9인 62.4%, 10~29인 규모 39.8%였던 것을 이번 기와 비교해 볼 때 특히 5인 미만 규모의 취득률 성장세가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체의 비중이 90%를 넘는 도소매 및 소비

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득률이 평균을 약간 넘거나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도 전반적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확대 속도 둔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는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경험자(이하 재취득자)와 신규취득자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새로 성립된 사업에 취업함으로써 피보험자격이 생길 수 있고, 이미 고용보험이 성립되어 있던 사업장에 취업함으로써 피보험자격이 생길 수 있다.

1999년 하반기 취득자 119만명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경험 유무별로 살펴보면, 재취득자는 57.1%인 68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신규취득자는 42.9%인 51만명으로 나타났다. 피보험자격 취득경험자 중 사업장

〈표 4〉 취득자 구분에 따른 분포(1999년 하반기)

(단위: 천명, %)

구 분	피보험자격 최초 취득자	피보험자격 취득경험자	전 체
성립일 = 취득일	23 (4.5) (31.1)	51 (7.5) (68.9)	74 (6.2) (100.0)
성립일 > 취득일	485 (95.5) (43.4)	632 (92.5) (56.6)	1,117 (93.8) (100.0)
전 체	508 (100.0) (42.7)	683 (100.0) (57.3)	1,191 (100.0) (100.0)

자료: 고용보험 DB.

8) 전체 취득률이 [그림 9]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상시근로자 숫자 데이터에 값의 누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 되어서 취득한 자는 51천명이었고, 신규취득자 중 그와 같은 사람은 23천명이었다. 보다 자세하게 신규취득자를 분석해 보면, ①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경우(학교 및 훈련기관의 졸업 이후), ② 고용보험 비적용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적용사업장이 된 경우, ③ 1개월 미만 일용직 등 적용제외 종사상 지위에 있다가 고용지위 변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④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는 아니지만 노동시장 경력에서 신규로 고용보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취득자 규모를 추정해 보면⁹⁾, ①의 경우는 약 10만명으로 추정되며, ②는 약 0.3만명, ③은 약 4만명, ④의 경우는 약 37

만명으로 추정된다.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특성별 분포

〈표 5〉에서 1999년 하반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1,191천명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은 65 대 35로 전반기 63 대 37에 비해 다소간 남자의 취득비율이 높아지는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을 전체 피보험자의 남녀 성비(70대 30)와 비교하여 볼 때 여전히 여자의 진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30~39세의 경우 전체 취득자의 26.4%를 차지해 각 연령층에

(그림 10) 연령계층별·성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분포(1999년 하반기)

9) ①은 신규학졸자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였다. 고졸 이상으로 29세 이하인 자(전문대 및 대졸은 20세 미만 제외, 대학원졸은 25세 미만 제외)와 중졸로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 숫자이다. ②는 고용보험 DB에서 취득사유가 ‘최초 신규채용’, ‘신규채용(경력직)’, ‘기타(고용지위 변동과 새로이 적용사업장 되는 경우)’로 구분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타’에 속하고 사업장의 고용보험 성립일이 그 사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과 같은 자로 추정하였다. ③은 ‘기타’에 속하고 사업장의 고용보험 성립일보다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늦은 사람을 추정하였다. ④는 ‘신규채용(경력직)’으로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했지만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험이 없는 자와 ‘최초 신규채용’ 중에서 30세가 넘는 자와 초졸로 30세 미만인 자, 중졸로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를 더해서 추정한 수치이다.

[그림 11] 사업장규모별·성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분포(1999년 하반기)

[그림 12] 직종별·성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분포(1999년 하반기)

[그림 13] 학력별·성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분포(1999년 하반기)

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으며, 30세 미만의 경우가 49.6%로 젊은층에 분포가 집중되어 있었다.

사업장규모별 분포를 보면, 1999년 상반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전체의 29.5%, 30인 미만에서 전체의 60%를 차지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발한 취득이 이루어져 적용확대의 영향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하반기에는 30인 미만이 전체의 45%, 10~29인 규모가 20.9%를 차지하고 5인 미만은 11.5%를 차지하는 데에 그쳐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적용확대 속도가 1999년 상반기에 비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취득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사무직이 전체의 24.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단순노무직 근로자로 22.3%를 차지했다.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월평균 급여

〈표 6〉에서 보듯이 1999년 하반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들의 취득시 월평균 급여액은 919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월평균 급여액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1,028천원, 여자 716천원으로 나타나 자격 취득자의 성별 월평균 급여액 평균격차는

〈표 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특성별 분포(1999년 하반기)

(단위 : 천명, %)

구분	성 별		연 령 별								지 역 별					
	남자	여자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서울 강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라	대전 충청	
전체	1,190 (100)	773 (65.0)	417 (35.0)	64 (5.4)	218 (18.3)	310 (26.1)	314 (26.4)	177 (14.9)	99 (8.3)	8 (0.7)	428 (36.0)	188 (15.8)	117 (9.8)	279 (23.4)	84 (7.1)	94 (7.9)
학 령 별								사 업 장 규 모 별								
초졸	중졸	고졸	전문 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5인 미만	5~ 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건설 공사		
28 (2.3)	96 (8.1)	709 (59.6)	146 (12.2)	199 (16.7)	13 (1.1)	137 (11.5)	150 (12.6)	248 (20.8)	238 (20.0)	171 (14.4)	45 (3.8)	48 (4.0)	92 (7.7)	58 (4.9)		
취득사유별			직 종 별													
피보험자격 최초취득자	피보험자격 취득경험자	고위 임직원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 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기능원및 관련기능 근로자	기계장치 조직원및 조립원	단순노무 직근로자					
51 (42.9)	68 (57.1)	25 (2.1)	42 (3.5)	120 (10.1)	294 (24.7)	125 (10.5)	4 (0.4)	245 (20.5)	69 (5.8)	266 (22.4)						

주: ()안은 구성비임.
자료 : 고용보험 DB.

312천원이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신규취득자를 제외한 재취득자의 월평균 급여액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별로는 40~49세 연령층에서 성별 월평균 급여 격차가 가장 컸으며,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과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계층에서 성별에 따른 월평균 급여의 차이가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자격취득자의 연령계층별 월평균 급여액은 40대에서 가장 높다. <부표 15>에서 재취득자의 연령별·성별 월평균 급여액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40대가 1,300천원으로 가장 높고, 20세 미만 계층이 555천원으로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30대 계층이 873천원으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가장 낮은 554천원이었다.

학력별 월평균 급여액은 대학원 이상이 1,756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초졸의 경우가 762천원으로 가장 낮아서 학력과 월평균 급여액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직장 이직사유별 재취득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부표 21>에서 보듯이 남녀 모두 비자발적 이직자(1,165천원 및 740천원)가 자발적 이직자(1,076천원 및 729천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특성별 취득시 월평균 급여액(1999년 하반기)

(단위: 천원, 천명)

구분	성 별		연 령 별							지 역 별						
	남자	여자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서울 강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라	대전 충청	
전체	919 (1,191)	1028 (773)	716 (417)	610 (65)	696 (218)	867 (310)	1080 (314)	1095 (177)	951 (99)	849 (8)	976 (428)	886 (188)	873 (117)	913 (279)	827 (84)	875 (94)
학 령 별			사 업 장 규 모 별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5인 미만	5~9인	10~ 29인	30~ 4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762 (28)	825 (96)	850 (709)	892 (146)	1196 (199)	1756 (13)	907 (138)	950 (152)	934 (251)	885 (885)	878 (878)	876 (876)	899 (899)	852 (852)			
직 종 별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기계장치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1,805 (25)	1,341 (42)	1,072 (120)	968 (294)	774 (125)	1,159 (4)	916 (245)	731 (69)	760 (267)								

주: ()안은 피보험자수임. 여기서의 월평균 급여란 피보험자격 취득시의 월정액 급여 초임을 의미함.
자료: 고용보험 DB.

라. 피보험자격 재취득자의 재취득 소요 기간 분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재취득자의 이전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직일)과 취득일(입직일)을 비교하여 본 결과, 재취득자 81만명 중 29만명의 재취득 소요기간이 1년이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범위의 한계와 제도상의 적용 제외 근로자가 상존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본 분석에서는 재취득 소요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취득 소요기간이 1년 이하인 52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7〉에서와 같이 재취득자 52만명의 재취득 소요기간은 평균 75.3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기의 평균 84.8일보다 짧아진 것으로 종업원 1인 이상의 전사업장으로의 적용확대와 경기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로는 여자의 재취득 소요기간이 77.7일로 남자보다 다소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20~24세의 재취득 소요기간이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재취득 소요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졸 제외), 특히 대학원 이상이 53.3일로 다른 학력계층에 비해 현저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경력취득자의 재취득 소요기간(1999년 하반기)

(단위 : 일, 천명)

구분	성 별		연 령 별							학 력 별					
	남자	여자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전체	74.2 (363)	77.7 (155)	45.9 (8)	80.0 (75)	79.5 (139)	70.6 (161)	74.1 (83)	78.8 (48)	78.9 (4)	73.7 (12)	76.3 (41)	78.4 (297)	75.4 (66)	66.7 (96)	53.3 (6)
지 역 별							직 종 별								
서울 강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라	대전 충청	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 가	사무직	서비스 근로자	농업 어업	기능원	조립원	단순 노무직	
73.9 (185)	72.8 (87)	75.3 (53)	76.2 (120)	85.2 (33)	76.2 (40)	65.6 (15)	68.4 (22)	72.6 (60)	71.1 (133)	86.6 (42)	78.7 (3)	75.5 (109)	78.1 (31)	79.2 (104)	

자료 : 고용보험 DB.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분석¹⁰⁾

1999년 6월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5,844,018명을 기준으로 볼 때 1999년 7~12월 사이에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는 1,319,091명으로 전체 피보험자 대비 22.6%가 6개월 동안 이직한 것으로 나타나 1999년 상반기(16.4%)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률이 크게 높아졌다. 이와 같은 상실률의 증가를 주도한 것이 1999년 상반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자발적 이직자수인데, 상실사유 비중면에서도 자발적 상실자의 비중이 약 8% 증가하였다. 이것은 경기 회복 및 벤처기업의 확산에 따른 창업이나 스카우트에 의한 이직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상실자 중 763천명(73.5%)이 개인적 사정, 전직 등을 위한 자발적 이직¹¹⁾으로 나타났고, 268천명(25.8%)이 권고사직, 정리해고, 폐업·도산,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자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681천명, 여자가 357천명으로 각각 65.6%와 34.4%의 비율을 나

타내어 전체 피보험자의 남녀 성비(남자 70.4%, 여자 29.6%)와 비교하여 볼 때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39세 연령계층이 29.1%, 25~29세 연령계층이 46.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규모별로는 30~99인 사업장에서 20.3%, 10~29인 사업장에서 20.0%, 100~299인 사업장에서 15.2%의 순으로 상실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1999년 상반기와 구성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의 비중도 5.9%에 이른다.

다음으로 상실자의 상실당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은 3년 미만이 전체 상실자의 82.2%로 나타나 1999년 상반기의 76.8%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후 피보험자격 상실일까지 누적된 피보험기간으로서 1999년 하반기 동안 피보험자격 상실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소정급여일수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는 실업급여 수급가능 피보험

10) 1999년 7~12월 사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된 총 1,319,091명 중에서 실제로 7~12월 사이에 이직한 피보험자는 1,036,706명이었다. 이들 중 약 10%인 103,814명을 임의로 표본추출(random sampling)하여 분석하였다. 『고용보험통계월보』상의 상실자수와 차이는 본 동향의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실제로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비해, 『고용보험통계월보』상의 상실자수는 사업장의 신고 - 상실후 14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함 - 를 받아 상실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실신고의 지연 등과 사업장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실제 상실자가 고용보험 DB에 포착되는 데에는 상당기간 늦어질 수 있으므로 본 분석에 사용된 상실자수는 실제로 발생한 상실자수보다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11) ① 전직, 자영업 등, ② 결혼, 출산, 육아,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③ 질병, 부상, 노령 등, ④ 징계해고, ⑤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등 따른 임의퇴직.

<표 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특성(1999년 하반기)

(단위 : 천명, %)

구분	성 별		연 령 계 층 별							지 역 별							초출
	남자	여자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서울 강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라	대전 충청		
전체	1,038 (100)	681 (65.6)	357 (34.4)	25 (2.4)	164 (15.8)	267 (25.7)	302 (29.1)	170 (16.4)	94 (9.1)	17 (1.6)	363 (35.0)	172 (16.6)	103 (9.9)	236 (22.8)	79 (7.6)	84 (8.1)	31 (2.9)
학 령 계 층 별			사 업 장 규 모 별														
종종	고졸	전문 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건설 공사	자발적 이직	폐업도산 공사중단		
92 (8.9)	623 (60.0)	119 (11.4)	164 (15.8)	10 (1.0)	111 (10.7)	111 (10.7)	207 (20.0)	211 (20.3)	157 (15.2)	43 (4.1)	44 (4.3)	92 (8.9)	61 (5.9)	763 (73.5)	34 (3.3)		
상 실 사 유				상실당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										실업급여 수급가능 피보험기간 ¹⁾ 규모			
경영상 필요	휴업체불 이전 등	기타회사 사정(명퇴)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	기타	6개월 미만	6개월~1년미만	1~2년	3~4년	5~9년	10년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1년미만	1~2년	3년 이상		
24 (2.3)	19 (1.9)	115 (11.1)	5 (0.5)	71 (6.8)	7 (0.7)	420 (40.5)	188 (18.1)	245 (23.6)	82 (7.9)	63 (6.1)	40 (3.8)	296 (28.5)	196 (18.9)	339 (32.6)	207 (20.0)		

주 : 1) 실업급여 수급가능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후 피보험자격 상실시기까지 누적된 피보험기간으로서 이번 피보험자격 상실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소정급여일수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는 피보험기간을 말함. 따라서 여기에는 이전의 실업급여 수급으로 활용된 피보험기간은 제외됨.

자료 : 고용보험 DB.

여 수급요건을 충족시켜 실업급여 지출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기간 - 이전의 실업급여 수급으로 활용된 피보험기간은 제외 - 의 분포는 6개월 미만이 28.5%이고 6개월 이상이 71.5%로 나타났다. 즉, 1999년 하반기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 중 71.5%는 여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잠재적 실업급여 수급자라 하겠다.

가. 상실시기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현황

다음은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를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분석한 것이다. 비자발적 이직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이유는 이들이 현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

[그림 14]에서와 같이 1999년 하반기 비자발적 상실자의 비율은 25.8%로 나타나 1999년 상반기(28.4%)에 비하여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약간 감소했다.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IMF 구제금융시기가 본격화된 1998년 상반기에 급증하여 하반기(33.2%)에 최고조에 이른 후 1999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폐업·도산,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이 줄어든 데에 기인한다.

나. 성별·연령계층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현황

[그림 14] 비자발적 피보험자격 상실자를 추이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은 남자가 26.7%로 여자의 24.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명예퇴직이나 계약만료·공사종료로 이직하는 경우가 약간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부표 26 참조).

연령계층별로 보면 비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계층은 60세 이상(55.9%)이며 연령계층이 낮을수록 그 비중도 낮아져 20세 미만에서는 5.3%에 불과하다. 모든 연령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는 권고사직, 계약만

[그림 15] 연령계층별 비자발적 상실자 비율 현황(1999년 하반기)

료·공사종료이며 60세 이상에서는 정년의 사유가 가장 많다(부표 26 참조).

반면 젊은 층의 자발적 이직자의 비율을 보면, 20세 미만의 경우 94.5%, 20~24세의 경우 85.3%로 매우 높게 나타나 여타 연령층에 비해 자발적 직장이동이 가장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부표 26 참조).

다. 직종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현황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직종의 상실자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이직한 비율이 40% 정도로 나타나 다른 직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데 비해, 기계장치조작원 및 조립원(11.5%)과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과 시장판매근로자(20.7%) 직종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직종별로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와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 및 공사종료의 비중이 높는데 비해, 여타직종은 권고사직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부표 28 참조).

라. 상실당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현황

1999년 하반기에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이직자 중 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가 27.3%, 6개월~1년 미만이 21.8%, 1~2년

[그림 16] 직종별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1999년 하반기)

(그림 17) 이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별 비자발적 상실자 분포(1999년 하반기)

미만이 26.2%로 전체 이직자의 75.3%가 2년 내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발적 이직사유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이직자의 경우 6개월 미만이 45.2%이며 2년 미만은 84.8%에 이르고 있어 자발적 이직자의 이전직장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부표 33 참조).

마. 실업급여 수급가능 피보험기간¹²⁾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현황

실업급여 수급가능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후 피보험자격 상실시기까지 누적된 피보험기간으로서 이번

피보험자격 상실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소정급여일수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는 피보험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전의 실업급여 수급으로 활용된 피보험기간은 제외된다.

1999년 하반기에 비자발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이직자 중 실업급여 수급가능 피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19.4%, 6개월 이상인 경우가 80.6%로 나타났다(부표 33-1 참조). 후자를 잠재적 실업급여 수급자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약 217천명으로서 동 기간 전체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21%에 해당한다.

12) 실업급여 수급가능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후 피보험자격 상실시기까지 누적된 피보험기간으로서 이번 피보험자격 상실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소정급여일수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는 피보험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전의 실업급여 수급으로 활용된 피보험기간은 제외된다.

〔그림 18〕 실업급여 수급가능 피보험기간별 비자발적 상실자 분포(1999년 하반기)

II. 고용보험사업 추진실적

1. 개요

〈표 9〉는 전체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납입한 보험료 대비 고용보험사업의 활용에 따른 지급액 비율을 연도·사업별로 비교하고 있다. 1999년의 전사업 보험료 합계는 1조 7,474억원¹³⁾으로서 1998년에 비해 7,901억원 증가하였다. 대규모의 보험료 증액은 1999년 1월의 고용보험료 인상과 1998년 10월에 실시된 전사업장으로서의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기인한다. 한편 전사업의 지급액 합계는 1조 5,458억원으로서 지난 해에 비해 4,064억원 증가하였다. 절대액으로 보면 직업능력개발(1,672억원), 실업급여(1,510억원), 고용안정사업(882억원)의 순이지만 증가율로 보면 고용안정사업이

91.3%의 증가세를 보이며 가장 크게 성장했다.

각 사업별로 보험료 수준과 지급액 수준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있는데 연도별로 비교해 보아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활용이 활발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1999년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의 전사업 평균은 88.5%로서 IMF 구제금융시기 직후였던 1998년의 119.0%에 비해 30.5% 감소했다. 가장 크게 감소한 사업은 실업급여로서 135.5%에서 92.3%로 43.2%가 감소했는데 실제로 IMF 구제금융시기 이후 급증했던 비자발적 실직이 점차 수그러들면서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1998년의 438천명에서 1999년의 328천명으로 줄어들었다.

13) 1999년 확정보험료 통계치가 아님에 유의. 보석에 이용한 고용보험 DB 입수시점이 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지 못한 때여서 개산·확정보험료가 사업체에 따라 뒤섞여 있음을 감안할 것.

〈표 9〉 연도별 고용보험사업 보험료 대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97			1998			1999		
	지급액(A)	보험료(B)	A/B	지급액(A)	보험료(B)	A/B	지급액(A)	보험료(B)	A/B
전 체	142,179 (100.0)	873,487 (100.0)	16.3	1,139,437 (100.0)	957,312 (100.0)	119.0	1,545,830 (100.0)	1,747,363 (100.0)	88.5
고용안정사업	12,274 (8.6)	171,832 (19.7)	7.1	96,590 (8.5)	177,400 (18.5)	54.4	184,794 (12.0)	331,834 (19.0)	55.7
직업능력개발사업	58,873 (41.4)	195,935 (22.4)	30.0	257,696 (22.6)	200,405 (20.9)	128.6	424,851 (27.5)	401,457 (23.0)	105.8
실업급여	71,032 (50.0)	505,720 (57.9)	14.0	785,151 (68.9)	579,507 (60.5)	135.5	936,185 (60.6)	1,014,072 (58.0)	92.3

주 : 각 사업별 지급액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 지원사업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고용안정사업 중 인력은행지원·고급인력정보센터지원·교육시설설치지원·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자 등의 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직업훈련시설 및 장비 대부분은 제외되어 있음. 또한 1999년 보험료의 대부분은 1년치 개산보험료로서 추가·증가·반환 등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다른 자료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도 지급액 절대수치는 증가하였으나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은 22.8% 감소해 상대적으로 활용정도는 낮아졌다. 고용안정사업만이 절대액과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 모두에서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의 회복세와 완화된 채용장려금의 수급 요건 등 고용촉진장려금의 증가에 기인한다.

[그림 19]는 고용보험사업의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99년은 보험료 측면에서 보면, 전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1년치의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해이고, 지급액 측면에서 보면, IMF 구제금융에 따른 경제 위기를 회복하기 시작한 이후 고용보험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해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정상궤도에서 나타날 고용보험 활용정도가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고용보험의 상대적 활용정

도는 노동시장 상황과 정책의지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겠지만 향후 그 추이는 1999년에 보여준 활용정도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고용안정사업

가. 특성별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

지역별·규모별·산업별로 전체 사업장에서 납부한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대비 고용안정사업에 의한 지원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의 추이가 [그림 20]에 나타나 있다. 1999년 하반기 이 비율의 전체 평균은 약 30.7%로서 3,318억원의 보험료 중 약 1,020억원이 지원금으로 지급되었다. 이 그림을 보면 1998년 하반기

[그림 19] 연도별 고용보험사업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 추이

[그림 20] 반기별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

를 기점으로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이 떨어지는데, 이는 1998년 10월 이후 전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신규가입 사업장이 급증하면서 보험료 수입은 1998년 하

반기 1,774억원에서 1999년 상반기 3,277억원으로 급등한데 반해, 경기회복의 여파로 그간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던 휴업수당 지원금이 줄어 전체적인 지급액이 같은 시기 966억원에서 826억원으로 감소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급액 비율은 채용장려금

의 지급이 급증한 1999년 하반기에 다시 30.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1999년 하반기에 광주·전라(41.81%) 지역에서의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활용이 가장 활발했고, 대구·경북(41.77%), 부산·경남(41.69%) 지역이 비슷한 수준의 높은 활용률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78.61%)에서의 활용이 가장 활발했고, 교육서비스업(39.59%), 제조업(35.25%) 및 광업(32.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현장이 집계된 건설공사(0.67%), 금융 및 보험업(8.00%)에서의 활용은 저조하였다. 건설공사는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이 1998년 이후 한번도 1%를 넘지 못하는 매우 저조한 활용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은 1998년 이후 지원실적 1, 2위를 기록하는 활발한 이용률을 보여 왔다. 규모별로는 5인 미

만 사업장(122.45%), 5~9인 사업장(62.84%)의 활용이 가장 활발하였고, 500~999인 사업장(6.83%)에서 가장 활용이 저조하였다. 규모별로 추이를 보면, 1998년 하반기까지는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1999년 상반기에 전규모의 사업장에서 고른 활용도를 보이게 되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회복을 반영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업장의 숫자가 크게 줄면서 기존에 주로 대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해온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액이 줄고 대신 채용장려금의 활용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표 10〉 지역별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 추이

(단위 : %, 백만원)

구 분	전체	지급액	서울·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보험료						
1997년 하반기		7.1	9.1	6.6	6.0	5.1	4.4	6.3
1998년 상반기	13.1	20,246	6.8	23.6	11.2	16.7	21.0	13.9
		155,013						
1998년 하반기	54.4	96,590	29.6	77.2	68.5	70.7	75.7	70.9
		177,400						
1999년 상반기	25.2	82,607	18.8	40.4	27.7	24.8	28.3	27.9
		327,662						
1999년 하반기	30.7	101,972	21.7	41.7	41.8	32.0	41.8	34.8
		331,834						

자료 : 고용보험 DB;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각호.

〈표 11〉 규모별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건설공사
1998년 상반기	1.2	0.8	5.4	11.0	13.8	15.8	13.5	13.8	0.3
1998년 하반기	1.1	13.4	24.1	42.3	58.4	67.1	50.8	70.7	0.3
1999년 상반기	20.6	25.8	27.8	32.2	20.2	19.2	14.1	30.2	0.1
1999년 하반기	122.4	62.8	41.0	30.7	17.5	12.4	6.8	18.3	0.7

자료 : 고용보험 DB;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각호.

〈표 12〉 산업별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농수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 업	건설업	건설 공사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수 리업	숙박 및 음식점 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 비스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 비스업	교육서 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	기타 산업
1998년 상반기	5.0	2.0	20.5	0.2	1.3	0.3	2.3	1.0	5.0	5.8	24.2	7.9	5.2	7.1	2.3
1998년 하반기	8.8	11.8	93.4	0.7	11.4	0.3	48.9	21.3	29.3	12.9	57.7	15.2	8.3	11.9	3.6
1999년 상반기	5.6	22.4	36.5	2.2	13.0	0.1	10.3	7.7	7.8	32.9	43.2	2.1	9.3	7.2	11.9
1999년 하반기	11.9	32.6	35.2	2.1	23.5	0.7	35.2	12.4	11.9	8.0	78.6	24.2	39.6	12.4	3.0

자료 : 고용보험 DB;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각호.

나. 세부사업별 지원금 지급현황

1995년 제도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고용안정사업 지원실적을 사업별로 살펴보면(표 13 참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등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안정사업의 시행 이후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더불어 지원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휴업 등 고용유지지

원을 지원실적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IMF 구제금융에 따른 경제위기를 맞기 전 1997년 하반기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실적이 매우 미미하였고, 1998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고용조정지원금의 활용이 대폭 확대됨을 볼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중에서도 특히 휴업과 고용유지훈련을 중심으로 활용이 활성화되었다. 1999년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실적이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채용장려금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다. 1998년 하반기에는 고용안정사업 중 채용장려금이 7.6%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1999년 상반기 총지원금 중 27.4%, 1999년 하반기 51.8%로 확대되었다. 대신 경제위기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휴업수당지원금은 1998년 상반기에 총지원금의 60%를 차지한 것을 정점으로 1998년 하반기 54.2%, 1999년 상반기 35.7%, 1999년 하반기 17.7%로 총지원금 중 비중이 하락하였다.

1999년 하반기의 실적을 좀더 분석해 보면, 전반기에 비해 지원인원은 줄고(-4.2%) 지원금액은 늘어났다(24.0%).

전년동기대비 실적도 지원인원에서는 -46.3%로 줄었고, 지원금액은 33.2%로 늘었다. 이는 지원인원이 많이 분포하고 있던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이 줄어드는(지원인원으로 볼 때 전반기 대비 47.6% 감소, 전년동기대비 79.4% 감소) 대신에, 인원당 지원금액의 기준이 큰 채용장려금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지원금액으로 볼 때 전반기 대비 134.7% 증가, 전년동기대비 808.9% 증가)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1999년 하반기의 고용안정사업별 지원비중을 살펴보면, 사업장 숫자로 볼 때(중복된 숫자가 아님) 고용안정사업을 활용한 총 22,946개소의 사업장 중 채용장려금을 50.8%(11,650개소)의 사업장이 활용해 가장

활발한 이용실적을 보였고, 그 다음은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을 40.7% (9,334개소)의 사업장이 활용했으며,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3.3%(768개소)의 사업장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 면에서는 전체 지원인원 326천명 중에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31.7%(103천명), 고용유지지원금(휴업)에 30.6%(99천명), 채용장려금에 24.2%(79천명)로 타지원금 및 장려금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원금액 면에서는 전체 1,020억원 중에서 채용장려금에 51.8%(530억원), 고용유지지원금(휴업)에 17.7%(180억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14.6%(150억원)가 지원되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서 신규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이 다수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보다 많이 활용되는 현상도 이번 기에 처음 나타났다(부표 34 참조). 가장 지원실적이 적은 지원금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지원금, 여성재고용장려금, 중업원기업인수지원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순이었다. 채용장려금과 신규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은 1999년 상반기부터 지원실적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경기적 요인과 지급요건을 월 1인 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 확대·완화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⁴⁾.

14)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1999년 하반기부터 동 조항을 시행하였다.

고용보험동향

〈표 13〉 고용안정사업 세부사업별 지급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1995년 하반기	1996년 상반기	1996년 하반기	1997년 상반기	1997년 하반기	1998년 상반기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전체	1,481 (100)	3,275 (100)	5,216 (100)	5,545 (100)	6,538 (100)	19,942 (100)	76,539 (100)	82,261 (100)	101,972 (100)	
고용 조 정 지 원	휴업	7 (0.5)	16 (4.9)	0 (0.0)	19 (0.3)	25 (0.4)	11,879 (60.0)	41,452 (54.2)	29,369 (35.7)	18,043 (17.7)
	인력재배치	0 (0.0)	0 (0.0)	0 (0.0)	0 (0.0)	0 (0.0)	95 (0.5)	389 (0.5)	114 (0.1)	280 (0.3)
	훈련	-	-	-	-	-	243 (1.2)	15,425 (20.2)	9,924 (12.1)	6,602 (6.5)
	근로시간 단축	-	-	-	-	-	178 (0.9)	388 (0.5)	313 (0.4)	404 (0.4)
	사외파견	-	-	-	-	-	159 (0.8)	643 (0.8)	656 (0.8)	464 (0.5)
	휴직	-	-	-	-	-	-	3,372 (4.4)	7,277 (8.8)	5,751 (5.6)
	고용유지지원 소계	7 (0.5)	16 (0.5)	0 (0.0)	19 (0.3)	25 (0.4)	12,554 (63.0)	61,669 (80.6)	47,653 (57.9)	31,544 (30.9)
	전직훈련지원금	0 (0.0)	0 (0.0)	0 (0.0)	0 (0.0)	2 (0.0)	0 (0.0)	32	-	-
	창업교육훈련지원금	-	-	-	-	2 (0.0)	19 (0.1)	143 (0.2)	-	-
	채용장려금	-	-	-	-	0 (0.0)	63 (0.3)	5,815 (7.6)	22,517 (27.4)	52,854 (51.8)
	재고용장려금	-	-	-	-	-	-	-	-	517 (0.5)
	소계	7 (0.5)	16 (0.5)	0 (0.0)	19 (0.3)	29 (0.4)	12,636 (63.4)	67,659 (88.4)	70,170 (85.3)	84,915 (83.3)
	고용 촉 진 지 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351 (91.2)	2,392 (73.0)	4,045 (77.5)	4,113 (74.2)	4,694 (71.8)	5,082 (25.5)	7,034 (9.2)	10,284 (12.5)
여성고용촉진장려금		56 (3.8)	610 (18.6)	830 (15.9)	946 (17.1)	1,085 (16.6)	1,375 (6.9)	884 (1.2)	689 (0.8)	751 (0.7)
고령자·여성재고용장려금		-	-	-	-	2 (0.0)	69 (0.3)	97 (0.1)	43 (0.0)	431 (0.4)
직장보육시설지원금		67 (4.5)	257 (7.8)	341 (6.5)	467 (8.4)	728 (11.1)	780 (3.9)	865 (1.1)	979 (1.2)	1,052 (1.0)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	-	-	49 (0.0)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		-	-	-	-	-	-	-	96 (0.1)	226 (0.2)
소계	1,474 (99.5)	3,259 (99.5)	5,216 (100)	5,526 (99.7)	6,509 (99.6)	7,306 (36.6)	8,880 (11.6)	12,091 (14.7)	17,057 (16.7)	

주 : 1997년 하반기부터 1999년 상반기까지 고용촉진지원금 중 재고용장려금이 존재하였으나, 이는 고령자 및 여성의 재고용을 위한 장려금의 성격이었음. 이전 고용보험동향 자료와의 시계열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의 표에서는 고령자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서 고령자·여성재고용장려금 항목을 빼서 따로 보고하였음. 고용보험동향에서 실적이 보고되지 않았거나 실적이 없는 적응훈련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자,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제외하였고, 인력은행지원, 고급인력정보센터지원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 고용보험 DB;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각호.

〈표 14〉 고용안정사업 지원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사 업 명	인 원					금 액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증 감 률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증 감 률		
				전년동 기대비	전반기 대비				전년동 기대비	전반기 대비	
전 체	606,218 (100.0)	340,607 (100.0)	325,796 (100.0)	-46.3	-4.2	76,539 (100.0)	82,261 (100.0)	101,972 (100.0)	33.2	24.0	
소 계	539,529 (89.0)	251,844 (74.0)	219,297 (67.3)	-59.4	-12.9	67,659 (88.4)	70,170 (85.3)	84,915 (83.3)	25.5	21.0	
고 용 조 정 지 원	고용유지지원금	534,300 (88.1)	229,514 (67.6)	140,077 (43.0)	-73.8	-39.0	61,669 (80.6)	47,653 (57.9)	31,544 (31.0)	-48.8	-33.8
휴 업	483,943 (79.8)	190,485 (56.0)	99,778 (30.6)	-79.4	-47.6	41,452 (54.2)	29,369 (35.7)	18,043 (17.7)	-56.5	-38.6	
근로시간 단축	3,774 (0.6)	2,753 (0.8)	4,128 (1.3)	9.4	49.9	388 (0.5)	313 (0.4)	404 (0.4)	4.1	29.1	
훈 련	35,171 (5.8)	14,529 (4.3)	17,303 (5.3)	-50.8	19.1	15,425 (20.2)	9,924 (12.1)	6,602 (6.5)	-57.2	-33.5	
사외파견	702 (0.1)	852 (0.3)	638 (0.1)	-9.1	-25.1	643 (0.8)	656 (0.8)	464 (0.5)	-27.8	-29.3	
인력재배치	345 (0.1)	209 (0.1)	435 (0.1)	26.1	108.1	389 (0.5)	114 (0.1)	280 (0.3)	-28.0	145.6	
휴 직	10,365 (1.7)	20,686 (6.1)	17,795 (5.5)	71.7	-14.0	3,372 (4.4)	7,277 (8.8)	5,751 (5.6)	70.6	-21.0	
채용장려금	5,024 (0.8)	22,330 (6.6)	78,952 (24.2)	1471.5	253.6	5,815 (7.6)	22,517 (27.4)	52,854 (51.8)	808.9	134.7	
재고용장려금	-	-	268 (0.1)	-	-	-	-	517 (0.5)	-	-	
소 계	66,689 (11.2)	88,284 (26.0)	106,499 (32.7)	59.7	20.6	8,880 (11.6)	12,091 (14.7)	17,057 (16.7)	92.1	41.1	
고 용 촉 진 지 원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63,466 (10.7)	85,602 (25.1)	103,371 (31.7)	62.9	20.8	7,034 (9.2)	10,284 (12.5)	14,910 (14.6)	112.0	45.0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1,767 (0.3)	1,191 (0.3)	1,225 (0.4)	-30.7	2.9	981 (1.3)	732 (0.9)	821 (0.8)	-16.3	12.2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1,456 (0.2)	1,368 (0.4)	1,492 (0.5)	2.5	9.1	865 (1.1)	979 (1.2)	1,052 (1.0)	21.6	7.5	
장기실업자고용 촉진장려금	-	-	128 (0.1)	-	-	-	-	49 (0.0)	-	-	
종업원기업인수 지원금	-	123 (0.0)	283 (0.1)	-	130.1	-	96 (0.1)	226 (0.2)	-	135.4	

자료: 고용보험 DB;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활용지수』 41%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다. 산업별 고용안정사업 활용현황

1999년 하반기의 각 산업별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활용현황을 살펴보면(부표 35 참조),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의 23% 및 피

제조업에 지원인원의 50.5%, 지원금액의 43%가 집중되어 있다. 1999년 하반기와 비교해 보면, 제조업에 지원인원의 67%, 지원금액의 54%가 편중되어 있었던 것이 완화된 것인데, 이는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신규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이 두 배 가

이(1999년 상반기 33억원에서 1999년 하반기 65억원) 지원되었고, 채용장려금도 같은 시기에 3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4배 가까이 더 지원된 것이 원인이었다. 총지원금 중 약 11%가 건설업(건설현장 제외)에, 약 10%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지원되었다. 두 업종의 비중이 높아진 데에도 채용장려금 증가가 큰 역할을 하였다. 건설업의 경우 109억원의 지원금 중 72억원으로 66.6%나 채용장려금이었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경우 104억원의 지원금 중 97억원으로 무려 93%를 채용장려금으로 지원받았다.

보다 정확히 산업별 고용안정 세부사업의 활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분포를 보험료 분포와 비교한 상대적 활용정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표 15>는 산업별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구성비를 보험료 구성비로 나눈 '상대적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안정사업 전체에 대한 상대적 활용도의 크기는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건설현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활용도가 미미했다.

고용안정 세부사업의 상대적 활용도를 산업별로 보면,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의 경우 여전히 제조업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았고, 채용장려금의 경우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도 비슷한 수준의 높은 활용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압도적인 활용도를 보였고, 광업에서 그 다음으로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활용도가 높았고,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았다.

라. 사업장규모별 고용안정사업 활용현황

사업장규모별 고용안정사업 활용현황을 보면(부표 37 참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999년 들어 채용장려금 활용증가와 더불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98년에 비해 중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지원실적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지원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이 100인 이상 규모에서 감소하는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적용확대 및 누락사업장의 신규가입으로 전반적인 활용실적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추가로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고용안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반복한

〈표 15〉 산업별 고용안정 세부사업의 상대적 활용도(1999년 하반기)

(단위 : %)

구 분	진 체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고용유지 지원금 (훈련)	고용유지 지원금 (사외파견)	고용유지 지원금 (인력재배치)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채용 장려금	
농수림어업	38.8	29.3	0	0	0	0	13.2	0	49.2	
광 업	106.2	136.0	0	0	567.4	0	118.2	0	97.5	
제 조 업	114.6	242.1	209.2	205.1	181.0	174.8	62.7	177.1	83.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7.0	0	0	0	0	0	9.5	0	11.8	
건설업(본사)	76.5	10.3	91.0	136.6	56.0	0	260.5	7.5	98.3	
건설업(공사현장)	2.1	0	0	0	0	0	0	0	1.9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14.5	9.0	7.9	0	13.9	0	47.6	0	207.2	
숙박 및 음식점업	40.4	46.8	391.6	0	0	0	70.6	95.4	39.7	
운수·창고 및 통신업	38.7	13.0	0	0	98.3	0	8.5	365.6	38.6	
금융 및 보험업	26.0	0	0	0	0	0	0	0	42.1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255.7	51.2	21.2	11.7	141.1	180.1	290.5	21.8	233.4	
교육서비스업	128.8	2.5	17.6	0	0	0	116.5	6.3	220.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0.2	0	0	103.5	0	0	2.2	0	39.2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78.6	7.2	0	0	0	641.9	149.9	0.5	86.4	
기타산업	9.6	0	0	0	0	0	27.5	0	6.3	
구 분	고령자고 용촉진 장려금 (다수고령 자)	고령자고 용촉진 장려금 (재고용 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규고령 자)	여성 고용촉진 장려금 (육아휴직)	여성고용 촉진 장려금 (여성 재고용)	여성 고용촉진 장려금 (여성가장)	직장보육 시설 지원금	종업원 기업인수 장려금	재고용 장려금	장기실업 자고용촉 진장려금
농수림어업	75.3	0	3.1	0	0	855.6	0	0	0	0
광 업	217.7	756.7	79.3	0	0	0	0	0	0	0
제 조 업	45.4	191.9	17.2	20.4	102.1	99.6	132.9	266.5	219.8	114.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3	0	0.7	3.7	0	0	0	0	29.3	0
건설업(본사)	5.0	14.3	13.1	0.7	98.6	17.7	6.8	0	11.1	30.7
건설업(공사현장)	13.6	0	3.5	0	0	0	0	0	0	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3.3	33.6	16.8	18.5	103.0	144.0	13.6	8.0	13.1	220.9
숙박 및 음식점업	29.2	40.4	11.7	12.7	0	1046.1	0	0	23.5	0
운수·창고 및 통신업	151.2	12.5	8.9	217.8	28.7	18.5	62.9	0	4.8	45.6
금융 및 보험업	0.7	47.0	1.8	740.1	55.7	0	20.5	0	13.5	0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645.2	41.1	852.4	12.2	69.9	109.0	45.3	0	120.4	248.3
교육서비스업	37.1	25.4	28.9	21.2	526.1	934.8	32.8	0	0	249.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6.1	0	7.0	53.3	579.4	80.0	961.8	0	11.8	0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9.0	405.9	172.0	40.9	46.7	188.7	146.7	0	28.9	120.6
기타산업	22.9	0	0	165.1	0	0	264.9	0	0	0

주 : 고용보험 세부사업의 산업별 상대적 활용도 = (각 산업의 사업장에 지급된 지원금의 구성비 ÷ 각 산업의 사업장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구성비) × 100.

어느 산업의 상대적 활용도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이 비율이 작은 산업에 비해 당해 고용안정 세부사업의 활용이 활발했음을 의미함.

자료 : 고용보험 DB.

영향도 지적될 수 있겠다.

1997년 지원실적을 보면, 100~299인 규모와 1,000인 이상 규모에서 가장 활발히 고용안정사업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특별히 어떤 규모에 집중되기보다 전규모에서 고루 활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1997년까지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7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 위주로 집행된 1998년에는 대규모 사업장 편중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지원금의 46.3%를 독식했고, 500인 이상 규모에서 56%를 지원 받았다. 이런 현상은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이 감소하고 채용장려금이 활성화되는 1999년으로 들어오면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총지원금의 19.6%, 30인 미만에 42.6%, 500인 이상에 28.8% 1,000인 이상에 25.8%가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반전은 1999년 하반기 지원실적을 보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지원금의 분포로 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총지원금의 17.7%(500인 이상에는 19.6%)가 지원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29.5%(10인 미

만에는 41.1%)가 지원되었다. 그리고 고용안정사업 총지원금 중 44%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채용장려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5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된 300억원 중 채용장려금 비중은 93.7%) 규모별 지원 실적 추이 변동에서 채용장려금이 갖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 구성비를 보험료 구성비로 나눈 상대적 활용도를 보더라도(표 16 참조) 5인 미만, 5~9인, 10~29인 규모 순으로 고용안정사업을 활발히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별로 보면,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은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활발히 이용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활용실적이 가장 적었다. 이는 고용유지지원금 전체로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채용장려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활용실적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뒤를 5~9인, 10~29인 규모 사업장이 따랐다. 다수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은 30~99인 규모 사업장의 이용실적이 높았고, 신규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은 5~9인 규모에서 높았다. 1999년 하반기에 신설된 재고용장려금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지원금은 활용실적이 미미한 가운데 각각 30~99인 규모, 5인 미만 규모에서 활용실적이 높았다.

〈표 16〉 사업장규모별 고용안정 세부사업의 상대적 활용도(1999년 하반기)

(단위 : %)

구 분	전 체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시간단축)	고용유지 지원금 (훈련)	고용유지 지원금 (사외파견)	고용유지 지원금 (인력재배치)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채 용 장려금
5인미만	390.9	24.6	0.7	0.2	11.9	89.0	122.1	5.1	705.6
5~9인	20.6	68.3	51.6	0.6	76.6	190.7	188.3	6.3	288.3
10~29인	130.8	82.0	99.9	5.9	112.0	298.2	189.5	15.1	139.9
30~99인	97.9	135.8	65.6	14.5	150.6	0	209.1	13.3	56.4
100~299인	56.0	105.9	191.2	72.8	20.1	332.0	52.1	2.1	16.8
300~499인	39.5	43.3	0	127.3	154.1	0	58.0	21.8	2.6
500~999인	21.8	32.2	598.8	53.0	96.3	0	4.5	57.4	2.5
1,000인이상	58.5	149.5	0	246.7	132.9	0	56.7	295.6	10.5
건설공사	2.1	0	0	0	0	0	0	0	1.9

구 분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 (다수고령자)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 (고령자제고용)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 (신규고령자)	여성고용 촉진장려금 (육아휴직)	여성고용 촉진장려금 (여성제고용)	여성고용 촉진장려금 (여성가장)	직장보육 시설지원금	종업원기업 인수장려금	재고용 장려금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5인미만	24.2	64.4	122.1	13.0	311.0	648.0	3.8	9.4	252.3	647.1
5~9인	109.9	80.7	252.8	7.5	327.6	324.9	11.9	92.0	94.3	433.2
10~29인	182.5	97.2	237.8	6.0	183.7	92.4	24.9	0	232.1	138.4
30~99인	204.1	198.6	208.8	6.6	139.8	100.3	62.2	0	270.3	46.6
100~299인	169.4	143.2	75.0	26.1	60.0	29.6	141.2	0	58.6	24.8
300~499인	103.7	259.4	74.7	55.3	36.5	35.4	124.5	1498.7	9.9	0
500~999인	78.6	24.4	12.9	35.6	0	3.5	134.5	0	4.8	0
1,000인이상	15.2	41.8	9.0	287.5	19.2	2.8	160.4	0	4.1	0
건설공사	13.3	0	3.4	0	0	0	0	0	0	0

주 : 고용보험 세부사업의 사업장 규모별 상대적 활용도 = {각 규모의 사업장에 지급된 지원금의 구성비 ÷ 각 규모의 사업장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구성비} × 100.

어느 사업장 규모의 상대적 활용도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이 비율이 작은 규모에 비해 당해 고용안정 세부사업의 활용이 활발했음을 의미함.

자료 : 고용보험 DB.

2. 직업능력개발사업¹⁵⁾

가. 개 요

1999년 12월말 현재 전체 적용사업장은 601,394개소, 피보험자는 6,054,479명으로 나타나 1999년 6월에 비하여 사업장은 약 3만여개소, 피보험자는 20여만명이 증가했는데, 1998년 10월의 전면적인 적용확대 이후 계속 급증해 왔던 15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장규모별 분포는 건설공사 현장을 포함한 1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9.1%를 차지하여 거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나, 피보험자수는 150인 미만 사업장이 59%, 건설공사가 1.5%인 반면, 150인 이상 사업

장의 피보험자수 비율이 3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이 34.7%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 22.9%, 교육서비스업 16.6%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피보험자수의 분포는 제조업이 40.8%, 금융·보험업이 18.8%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업종별 평균 사업장 규모, 즉 사업장당 피보험자수는 제조업이 71.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운수·창고·통신업이 32.8명, 금융·보험업이 17.1명의 순이었다. 그러나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건설업은 각각 3.8명, 5.5명, 6.8명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1999년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총지원금액은 4,249억원으로 1998년의 2,580억원에 비하여 64%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표 17〉 직업능력개발사업 규모별 적용현황(1999년 말 현재)

(단위: 개소, 명, %)

구 분	전 체	150인 미만	150인~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건설공사
사업장	601,394 (100.0)	569,417 (94.7)	4,679 (0.8)	531 (0.1)	26,767 (4.4)
피보험자	6,054,479 (100.0)	3,569,666 (59.0)	1,258,811 (20.8)	1,132,077 (18.7)	93,925 (1.5)

자료: 노동부.

15)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은 노동부의 자료와 고용보험 DB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고용보험 DB 원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세부추진 실적과 실업자재취직훈련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고용보험 DB 원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가 실제의 실적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는데, 이는 원자료의 data cleaning 과정에서 잘못된 자료(missing data)를 삭제한 후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표 18〉 직업능력개발사업 업종별 적용현황(1999년 말 현재)

(단위: 개소, 명, %)

구 분	전 체	농·수· 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공사	건설업	도소매 및 수리·숙박· 음식점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	교육서비스· 기타
사업장 (A)	601,394 (100.0)	1,466 (0.2)	908 (0.2)	137,659 (22.9)	768 (0.1)	68,282 (11.4)	208,658 (34.7)	16,789 (2.8)	66,586 (11.1)	100,278 (16.6)
피보험자 (B)	6,054,479 (100.0)	18,003 (0.3)	17,856 (0.3)	2,470,361 (40.8)	55,170 (0.9)	467,226 (7.7)	788,074 (13)	552,243 (9.1)	1,136,582 (18.8)	548,964 (9.1)
B/A	10.1	12.3	19.7	17.9	71.8	6.8	3.8	32.8	17.1	5.5

자료: 노동부.

또한 지원사업장이 1998년의 18,080개소에서 58,288개소로 크게 증가했으며, 지원 피보험자는 1998년의 59만여명에서 98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9년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액은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전체 금액의 72.1%인 3,062억원이 지급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5%인 829억원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훈련인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피보험자가 86만명으로 81.4%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실업자재취직훈련이 16.1%인 17만여명으로 나타났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세부내역별 지원을 〈표 19〉를 통해 살펴보면, 사업주에 대한

지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98년도¹⁶⁾ 18천여개 사업장, 409천명 지원에서 1999년에는 44천여개소에 781천명이 지원되어 100%내외의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지원금액 역시 408억원에서 829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근로자학자금대부와 실업자재취직훈련도 1998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원금액 면에서 각각 77.2%와 60.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유급휴가훈련은 1997년¹⁷⁾부터 계속 감소하여 1999년에는 지원금액이 57억여원으로 37.2% 감소하였으며, 직업훈련시설장비구입대부 및 지원과 수강장려금지원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 1999년부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이 변화함에 따라 1998년의 경우 사업내직업훈련, 교육훈련지원 실적은 1999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비교하였다.

17) 지원인원 5,559명, 지원금액 13,027백만원.

고용보험동향

〈표 19〉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 분	지원사업장		증감률	지원피보험자		증감률	지원금		증감률
	1998	1999	전년대비	1998	1999	전년대비	1998	1999	전년대비
소 계	25,912 (100.0)	58,288 (100.0)	222.4	588,006 (100.0)	977,952 (100.0)	79.8	258,043 (100.0)	424,851 (100.0)	64.6
직업능력개발훈련	17,741 (68.5)	43,512 (74.7)	145.3	408,603 (69.5)	781,408 (79.9)	110.7	40,781 (15.8)	82,869 (19.5)	103.2
유급휴가훈련	339 (1.3)	333 (0.6)	-1.8	3,940 (0.7)	8,446 (0.9)	114.4	9,117 (3.5)	5,723 (1.3)	-37.2
수강장려금	-	-	-	2 (0.0)	51 (0.0)	2450	1 (0.0)	40 (0.0)	3900
근로자학자금대부	7,832 (30.2)	14,443 (24.8)	84.4	12,350 (2.1)	17,362 (1.8)	40.6	16,949 (6.6)	30,042 (7.1)	77.2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	-	-	-	163,111 (27.7)	170,685 (17.5)	4.6	191,194 (74.1)	306,176 (72.1)	60.1

주 : 1) 1998년은 예상지원금 합계임.

2) ()안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세부사업별 구성비(%)임.

자료 : 노동부.

〈표 20〉 사업별 지원현황(1999년)

(단위 : 개소, 명, 천원, %)

구 분	전 체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수강장려금	실업자재취직훈련	근로자학자금대부
사업장	58,288 (100.0)	43,512 (74.7)	333 (0.6)	-	-	14,443 (24.8)
인 원	977,952 (100.0)	781,408 (79.9)	8,446 (0.9)	51 (-)	170,685 (17.5)	17,362 (1.8)
지원금	424,850,694 (100.0)	82,869,430 (19.5)	5,723,368 (1.3)	39,983 (-)	306,175,913 (72.1)	30,042,000 (7.1)

자료 : 노동부.

전체 지원인원의 57.6%인 378,431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이 30.1%인 154,975명, 150인 미만 사업장이 12.3%인 42,383명을 차지하였다. 1999년 상반기¹⁹⁾와 비교하여 1,000인

나. 직업능력개발사업 세부사업별 추진 실적¹⁸⁾

1) 직업능력개발훈련 추진실적

사업장규모별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이

18)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에서는 1999년 하반기 실적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며, 1999년 상반기 실적은 『고용보험동향』 1999년 가을호 참조.

이상 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및 피보험자의 훈련참여율은 1999년 상반기²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는데, 150인 미만 사업장의 훈련참여율은 3.4%였고, 피보험자의 훈련참여율은 1.8%로 나타났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의 훈련참여율은 337.6%, 피보험자 훈련참여율은 26.2%로 나타나 1999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훈련참여의 차이가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

업종별 직업훈련개발훈련 지원실적 중 지원사업장수는 제조업이 42.3%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보험·부동산업이 26.2%,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이 9.1%, 건설업이 9.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사업장의 구성비와 비교하여 볼 때 업종별 사업장의 훈련참여율은 전기·가스업종과 금융·보험·부동산업이 각각 28.3%와 10.7%의 순으로 나타나 높은 훈련참여도를 보였으며,

〈표 21〉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추진실적²¹⁾²²⁾ (1999년 하반기)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구 분	전 체	150인 미만	150인~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건설공사
지원사업장	27,124 (100.0)	19,428 (71.6)	5,903 (21.8)	1,793 (6.6)	-
전체사업장	601,394 (100.0)	569,417 (94.7)	4,679 (0.8)	531 (0.1)	26,767 (4.4)
사업장 훈련참여율	4.5	3.4	126.2	337.6	-
지원인원	514,752 (100.0)	63,221 (12.3)	154,975 (30.1)	296,556 (57.6)	-
전체피보험자	6,054,479 (100.0)	3,569,666 (59)	1,258,811 (20.8)	1,132,077 (18.7)	93,925 (1.5)
피보험자 훈련참여율	8.5	1.8	12.3	26.2	-
지원금액	55,092,487 (100.0)	7,311,444 (13.3)	17,311,812 (31.4)	30,469,231 (55.3)	-

자료: 노동부.

19) 1999년 상반기의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16,673명, 45.4%였다.

20) 1999년 상반기의 사업장 훈련참여율은 2.9%, 피보험자 훈련참여율은 4.4%이다.

21) 전체 적용사업장 601,394개소의 피보험자 6,054,479명 중 건설공사 26,767개소의 피보험자 93,925명을 제외하였다.

22) 지원사업장의 집계는 지원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1개 사업장에서 2번 이상의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장수를 초과하여 나타날 수 있다.

〈표 22〉 업종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추진실적(1999년 하반기)

(단위: 개소, 명, 천원, %)

구 분	전 체	농·수 ·임·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공사	건설업	도소매·수 리업·숙박 ·음식점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	교육서비스 ·기타
지원사업장	27,124 (100.0)	137 (0.5)	111 (0.4)	11,486 (42.3)	217 (0.8)	2,477 (9.1)	2,456 (9.1)	1,714 (6.3)	7,099 (26.2)	1,427 (5.3)
전체사업장	601,394 (100.0)	1,466 (0.2)	908 (0.2)	137,659 (22.9)	768 (0.1)	68,282 (11.4)	208,658 (34.7)	16,789 (2.8)	66,586 (11.1)	100,278 (16.6)
사업장 훈련참여율	4.5	9.3	12.2	8.3	28.3	3.6	1.2	10.2	10.7	1.4
지원인원	514,752 (100.0)	630 (0.1)	392 (0.1)	272,600 (53.0)	12,042 (2.3)	21,302 (4.1)	31,729 (6.2)	50,439 (9.8)	99,815 (19.4)	25,803 (5.0)
전체피보험자	6,054,479 (100.0)	18,003 (0.3)	17,856 (0.3)	2,470,361 (40.8)	55,170 (0.9)	467,226 (7.7)	788,074 (13)	552,243 (9.1)	1,136,582 (18.8)	548,964 (9.1)
피보험자 훈련참여율	8.5	3.5	2.2	11.0	21.8	4.6	4.0	9.1	8.8	4.7
지원금액	55,092,487 (100.0)	65,959 (0.1)	58,527 (0.1)	26,633,666 (48.3)	2,055,779 (3.7)	3,261,112 (5.9)	3,254,097 (5.9)	7,074,599 (12.8)	10,243,540 (18.6)	2,445,208 (4.4)

자료: 노동부.

하게 실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저조하게 나타났다.

1999년 하반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구분에 따른 지원사업장수는 총 17,516개로 향상훈련이 전체의 99%를 차지하여 양성훈련과 전직훈련을 실시한 사업장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향상훈련 중에서도 위탁훈련이 93.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원인원수를 살펴보면, 오히려 자체향상훈련에 참여한 인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향상훈련을 활발

지원금액 역시 향상훈련이 전체의 92.3%를 차지하였는데, 위탁훈련이 47.1%, 자체훈련이 45.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양성훈련과 전직훈련은 향상훈련에 비하여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훈련의 대부분이 향상훈련에 치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훈련방법은 집체훈련과 현장훈련 및 통신훈련으로 구분되는데, 〈표 23〉에서 1999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집체훈련으로 실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집체훈련은 지원사업장수, 지원인원수, 지원금액 등에서 전체의 95%내외

〈표 23〉 훈련과정 구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적(1999년 하반기)

(단위 : 개소, 명, %)

구 분		지원사업장수	지원인원수	지원금액(천원)
전 체		17,516 (100.0)	514,752 (100.0)	53,804,509(100.0)
양성훈련	자체	62 (0.4)	6,658 (1.3)	3,843,758 (7.1)
	위탁	106 (0.6)	1,244 (0.2)	125,187 (0.2)
향상훈련	자체	959 (5.5)	265,582 (51.6)	24,256,006 (45.1)
	위탁	16,371 (93.5)	241,001 (46.8)	25,322,934 (47.1)
전직훈련	자체	3 (0.01)	186 (0.03)	245,906 (0.5)
	위탁	15 (0.1)	81 (0.01)	10,719 (0.01)

자료 : 고용보험 DB 원자료.

〈표 24〉 훈련방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적(1999년 하반기)

(단위 : 개소, 명, 천원, %)

구 분	지원사업장수	지원인원수	지원금액(천원)
전 체	17,453 (100.0)	514,752 (100.0)	53,804,509 (100.0)
집 체 훈 련	16,445 (94.2)	487,361 (94.7)	51,478,848 (95.7)
현 장 훈 련	111 (0.6)	1,648 (0.3)	484,439 (0.9)
통 신 훈 련	897 (5.1)	25,743 (5.0)	1,842,221 (3.4)

자료 : 고용보험 DB 원자료.

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상반기에는 1%내외의 비중을 보이던 통신훈련이 1999년 하반기에는 약 5%내외로 증가하여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1999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1999년

하반기에도 기준외훈련이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지원금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훈련기준의 충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기준이 효율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직종별 훈련목표, 교과내용 및 시설·장비, 교사 등에 대한 일반적 기준임을 고려할 때, 기준훈련의 비중이 대단히 낮게 나타

고용보험동향

〈표 25〉 기준·기준외훈련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적(1999년 하반기)

(단위: 개소, 명, %)

구 분	지원사업장수	지원인원수	지원금액(천원)
전 체	16,741 (100.0)	514,752 (100.0)	53,804,509 (100.0)
기준훈련	348 (2.1)	4,243 (0.8)	2,532,102 (4.7)
기준외훈련	16,393 (97.9)	510,509 (99.2)	51,272,406 (95.3)

자료: 고용보험 DB 원자료.

나고 있다는 점은 실제적인 기업체의 훈련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훈련기준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1999년 하반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

직종 분포는 사무관리분야가 전체 지원인원수의 72.5%를 차지하여 1999년 상반기의 66.5%에 비하여 약 6%의 증가를 보였으며, 다른 훈련직종과 비교하여 볼 때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정보통신분야, 금융보험분야, 기계장비분야, 건설분야가 각각 9.6%, 4.2%, 2.6%의 순으로 나

〈표 26〉 1999년 상반기 훈련직종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적

(단위: 명, 개월, 천원, %)

구 분	지원인원수		지원금액	
전 체	명	(%)	천원	(%)
농림어업광업분야	8,141	(1.6)	770,757	(1.4)
섬유분야	2,202	(0.4)	356,823	(0.7)
화학제품및 요업분야	4,562	(0.9)	550,406	(1.0)
금속분야	2,269	(0.4)	227,673	(0.4)
기계장비분야	14,833	(2.9)	2,931,407	(5.4)
건설분야	9,402	(1.8)	1,990,213	(3.7)
전기분야	7,950	(1.5)	1,489,680	(2.8)
전자분야	6,336	(1.2)	1,455,613	(2.7)
정보통신분야	49,602	(9.6)	6,070,033	(11.3)
운송장비제조분야	3,087	(0.6)	345,418	(0.6)
산업응용분야	1,030	(0.2)	157,875	(0.3)
공예분야	303	(0.1)	37,664	(0.1)
서비스분야	8,380	(1.6)	705,090	(1.3)
사무관리분야	373,067	(72.5)	34,439,438	(64.0)
금융보험분야	21,575	(4.2)	2,064,608	(3.8)
의료분야	1,411	(0.3)	146,979	(0.3)
환경분야	602	(0.1)	64,837	(0.1)

자료: 고용보험 DB 원자료.

타났으며, 기타 훈련직종의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유급휴가훈련

1999년 하반기의 유급휴가훈련지원금은 총 31억원으로 185개 사업장의 7,023명에게 실시되었다.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여 지원받은 사업장 <표 27>과 같이 규모별로 구분하여 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이 42.7%를 차지하고 있고,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31.4%였으나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5.9%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장의 훈련참여율에 있어서 1,000인 이상 사업장이 14.9%,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1.2%로 대단히 낮게 나타났다

15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훈련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업종별 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장의 훈련 인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표 28>과 같이 금융·보험·부동산업종 및 제조업 등의 특정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 중에서도 금융·보험·부동산업종의 전체 훈련참여 사업장의 75.7%를 차지하고 있어 유급휴가훈련을 가장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훈련 인원은 제조업이 5,482명, 7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산업부문에서의 유급휴가훈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규모별 유급휴가훈련사업 추진실적(1999년 하반기)

(단위: 개소, 명, 천원, %)

구 분	전 체	150인 미만	15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건설공사
지원사업장	185 (100.0)	48 (25.9)	58 (31.4)	79 (42.7)	
전체사업장	601,394 (100.0)	569,417 (94.7)	4,679 (0.8)	531 (0.1)	26,767 (4.4)
사업장 훈련참여율	0.03	0.0	1.2	14.9	
지원인원	7,023 (100.0)	62 (0.9)	212 (3.0)	6,749 (96.1)	
전체피보험자	6,054,479 (100.0)	3,569,666 (59)	1,258,811 (20.8)	1,132,077 (18.7)	93,925 (1.5)
피보험자 훈련참여율	0.1	0.0	0.01	0.6	
지원금액	3,118,585 (100.0)	60,474 (1.9)	621,628 (19.9)	2,436,483 (78.1)	

자료 : 노동부.

〈표 28〉 업종별 유급휴가훈련사업 추진실적(1999년 하반기)

(단위: 개소, 명, 천원, %)

구 분	전 체	농·수· 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공사	건설업	도소매·수 리업·숙박· 음식점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	교육서비 스·기타
지원사업장	185 (100.0)	-	-	27 (14.6)	2 (1.1)	3 (1.6)	5 (2.7)	8 (4.3)	140 (75.7)	-
전체사업장	601,394 (100.0)	1,466 (0.2)	908 (0.2)	137,659 (22.9)	768 (0.1)	68,282 (11.4)	208,658 (34.7)	16,789 (2.8)	66,586 (11.1)	100,278 (16.6)
지원인원	7,023 (100.0)	-	-	5,482 (78.1)	52 (0.7)	20 (0.2)	19 (0.3)	123 (1.8)	1,327 (18.9)	-
전 체 피보험자	6,054,479 (100.0)	18,003 (0.3)	17,856 (0.3)	2,470,361 (40.8)	55,170 (0.9)	467,226 (7.7)	788,074 (13)	552,243 (9.1)	1,136,582 (18.8)	548,964 (9.1)
지원금액	3,118,585 (100.0)	-	-	709,597 (22.8)	78,065 (2.5)	44,640 (1.4)	59,009 (1.9)	559,457 (17.9)	1,667,817 (53.5)	-

자료: 노동부.

3) 실업자재취직훈련

1999년 하반기의 실업자재취직훈련수당과 훈련비용은 총 1,467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훈련수당으로 366억, 훈련비용으로 1,101억원이 지급되었다.

훈련수당 및 훈련비용의 훈련시설간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지정훈련시설에서 훈련수당의 약 57.5%를 차지하고 있어 1999년 상반기의 66.5%에 비하여 비중이 낮아졌으

며, 상대적으로 미지정훈련시설의 지원비중이 1999년 상반기의 8.0%에서 40.0%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999년 상반기에 실업자재취직훈련이 주로 지정훈련시설과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데 반하여 1999년 하반기에는 학원에서의 실업자재취직훈련이 대폭 감소하여 지정훈련시설 및 미지정훈련시설에서 실업자재취직훈련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30〉에서 실업자재취직훈련생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9년 하반기에 실업

〈표 29〉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금(1999년 하반기)

(단위: 천원)

구 분	전 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미지정)	학 원
지 원 금	146,722,367 (100.0)	93,770,418 (63.9)	51,419,282 (35.0)	1,532,667 (1.0)
훈련수당	36,633,013 (100.0)	21,052,762 (57.5)	14,652,083 (40.0)	928,168 (2.5)
훈련비용	110,089,354 (100.0)	72,717,656 (66.1)	36,767,199 (34.4)	604,499 (0.5)

자료: 노동부.

자재취직훈련에 참여한 고용보험 이직자는 13만여명에 이른다. 우선 성별의 경우 남자와 여자가 각각 50.3%와 49.7%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어 1999년 상반기와 1999년 하반기의 고용보험 이직자의 남녀 성비가 65 대 35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여자의 훈련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별로는 25~29세 연령층에서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훈련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30~39세 연령층이 29.3%, 20~24세 연령층이 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재취직훈련생의 학력은 고졸이 5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의 업종분포는 제조업 45.6%, 부동산업 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훈련기간은 5.1개월로 연령이 낮을

수록 훈련기간이 길었으며, 매월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평균 1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재취직훈련생의 훈련직종에 따른 분포는 서비스분야가 24.5%, 정보통신분야가 21.7%, 사무관리분야가 15.0%의 순으로 나타나 재취업이나 창업관련의 훈련직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근로자학자금대부

〈표 33〉에 나타난 근로자학자금대부 지원을 살펴보면,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대부가 62.4%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를 받은 피보험자 중 이공계 전

〈표 30〉 실업자재취직훈련생의 특성별 분포(1999년 하반기)

(단위 : 천명, %)

구분	성 별		연 령 별						학 력 별						
	남자	여자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전체	50.3	49.7	0.4	14.0	39.0	29.3	11.4	6.0	0.8	3.9	59.1	15.1	20.3	0.7	
100.0 (130,946)															
업 종 별															
농수 임업	어업	광업	제조	전기 수도	건설	도소매 업	숙박 음식	운수 통신	금융 보험	부동 산등	공공 국방등	교육	보건	기타 공공	국제
0.1	0.2	0.2	45.6	0.3	7.1	10.3	2.5	6.1	9.6	11.3	0.3	1.3	2.8	2.3	0.1
직 종 별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기능원및관련 기능근로자	기계장치조작 원및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3.8	3.1	7.7	39.0	11.6	0.3	20.7	4.0	10.0							

자료 : 고용보험 DB 원자료.

고용보험동향

〈표 31〉 실업자재취직훈련 참여자의 주요 특성(1999년 하반기)

(단위 : 명, 개월, 원)

구 분		인 원	평균 훈련기간(개월)	1인당 월평균 수당
전 체/평 균		130,946 (100.0)	5.1	99,747
연 령	20세 미만	469 (0.4)	6.4	80,909
	20~24세	18,285 (14.0)	5.8	92,279
	25~29세	51,069 (39.0)	5.2	94,875
	30~39세	38,376 (29.3)	4.9	108,401
	40~49세	14,890 (11.4)	4.7	104,178
	50세 이상	7,859 (6.0)	4.6	99,127
성 별	남 자	65,929 (50.3)	4.9	102,708
	여 자	65,017 (49.7)	5.4	96,744
학 령	초 졸	1,078 (0.8)	5.4	112,414
	중 졸	5,087 (3.9)	5.5	110,645
	고 졸	77,399 (59.1)	5.3	101,064
	전문대졸	19,804 (15.1)	5.0	94,703
	대 졸	26,624 (20.3)	4.6	97,132
	대학원졸 이상	954 (0.7)	4.2	97,670

자료 : 고용보험 DB.

〈표 32〉 훈련직종에 따른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적(1999년 상반기)

(단위 : 명, 개월, 천원, %)

구 분	지원인원수	평균 훈련기간	지원금액
전 체	130,946(100.0)	5.0	36,698,906 (100.0)
농림어업광업분야	84 (0.1)	6.0	27,888 (0.1)
섬유분야	1,784 (1.4)	4.8	717,596 (2.0)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662 (0.5)	5.2	163,106 (0.4)
금속분야	90 (0.1)	4.6	37,580 (0.1)
기계장비분야	13,446 (10.3)	5.2	4,663,921 (12.7)
건설분야	2,623 (2.0)	5.3	808,340 (2.2)
전기분야	3,410 (2.6)	5.2	957,037 (2.6)
전자분야	1,383 (1.1)	4.5	327,871 (0.9)
정보통신분야	28,395 (21.7)	4.6	6,831,140 (18.6)
운송장비제조분야	141 (0.1)	6.0	42,986 (0.1)
산업응용분야	7,903 (6.0)	5.8	2,271,112 (6.2)
공예분야	639 (0.5)	5.5	264,593 (0.7)
서비스분야	32,105 (24.5)	5.4	9,285,079 (25.3)
사무관리분야	19,669 (15.0)	4.4	4,901,227 (13.3)
금융보험분야	2,621 (2.0)	2.4	497,147 (1.4)
의료분야	10,382 (7.9)	6.2	2,904,558 (7.9)
환경분야	368 (0.3)	2.5	63,415 (0.2)
MISSING	5,241 (4.0)	-	1,934,310 (5.3)

자료 : 고용보험 DB.

〈표 33〉 근로자학자금대부 실적(1999년 하반기)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 분	전 체	계열별		기업별		성 별		학교별	
		이·공 자연계	기 타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기업	남자	여자	2년제	4년제
사업장	7,918 (100.0)	4,198 (53)	3,720 (47)	2,976 (37.6)	4,942 (62.4)	5,080 (64.1)	2,838 (35.8)	3,780 (47.7)	4,138 (52.3)
인 원	9,393 (100.0)	5,018 (53.4)	4,375 (46.6)	4,040 (43)	5,353 (57)	6,169 (65.7)	3,224 (34.3)	4,421 (47)	4,972 (53)
금 액	15,595 (100.0)	8,728 (56)	6,867 (44)	6,795 (43.6)	8,801 (56.4)	10,356 (66.4)	5,240 (33.6)	6,685 (42.9)	8,911 (57.1)

자료 : 노동부.

1999년 하반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정 신청자(이하 실업급여 신청자)는 138천명
으로 상반기의 190천명에 비하여 52천명

공이 53.0%로 기타 전공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또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비율은 '47.0 대 53.0'로 4년제 대학 재학중인 피보험자가 많았으며, 1인당 평균 대부금액은 166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피보험자격 상실자수, 비자발적 상실자수, 실업급여 신청자수 추이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추세는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1999년 들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그림 21 참조). 전체 상실자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비자발적 상실자수의 비중 감소와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사정 개선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999년 하반기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3,848억원으로 상반기의 5,510억원에 비해 1,662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추세 역시 1999년 3월의 1,018억원을 정점으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데 12월에는 512억원에 그치고 있다.

1999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수는 1,040천명(실업률 4.8%)이고 12월말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약 100천명이다.

로 전체 실업자의 약 9.6%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셈이다.²³⁾ 1999년 6월말의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인 10.6%에 비해 1% 하락한 것인데 이는 비자발적 이직자수의 비중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1999년 하반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상실자²⁴⁾는 217천명으로 같은 기간의 전체 상실자 1,038천명의 약 20.9%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138천명이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상실자의 63.6% 정도만이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다.

1999년 하반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를 대상으로 주요 사항을 분석하였다.

- 23)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라는 개념은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지 않다. 분모인 실업자수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stock 개념에 해당하는데 반해, 분자인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일정기간 동안 누적되는 flow 개념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수를 일정시점에 산정하는 개념이 없으므로 한 달간의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월말에도 유지된다고 보고 이를 당해 월말의 실업자수로 나누어 하나의 지표를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가 실업자를 포괄하는 정도를 개략적으로나마 측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비율은 실업급여의 포괄정도를 파악하는 다른 개념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도 자체의 시계열 추이는 나름대로 유의미할 수 있다.
- 2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자로서 실업급여 수급가능 피보험기간이 이직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2000년 4월 1일부터는 18개월 중 180일 이상으로 개정). 그러므로 이직사유와 실업급여 수급가능 피보험기간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자를 구분하여 보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단위: 천명)

구 분		실업급여 수급가능 피보험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이직사유	자발적 이직	비해당 (242)	비해당 (520)
	비자발적 이직	비해당 (52)	해 당 (217)

주: 고용보험 DB상 1999년 7~12월 기간의 피보험자격 상실자 1,038천명 중 고용보험 비적용 등의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7천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그림 22〕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 비율 추이

(표 34 참조). 먼저 사업장규모별로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이직한 실업급여 인정자 비율의 급증 추세가 현저하였다. 1998년 하반기에 16.3%이던 것이 1999년 상반기에는 32.2%로 증가하더니 1999년 하반기에는 45.8%에 달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의 경우 5.6%에서 15.3%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정자수도 두

배로 늘었다.²⁵⁾ 반면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이직한 수급자격 인정자의 비율은 1999년 상반기의 18.3%에서 하반기에는 9.3%로 크게 줄었고 인정자수는 거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성별로는 1999년 상반기에 비해 여자의 비율이 약간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약간 줄고 30대가 조금 늘었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

25) 1999년 상반기와 하반기 이직당시 사업장규모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 비교

(단위: 명, %)

구 분	이직당시 사업장 규모									건설 공사 구분 없음
	5인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1999년 상반기	186,903 (100.0)	10,533 (5.6)	15,170 (8.1)	34,567 (18.5)	39,602 (21.3)	29,194 (15.6)	11,532 (6.2)	12,077 (6.5)	34,245 (18.3)	없음
1999년 하반기	136,276 (100.0)	20,834 (15.3)	15,037 (11.0)	26,674 (19.5)	25,256 (18.5)	18,721 (13.7)	7,610 (5.6)	5,967 (4.4)	12,678 (9.3)	3,799 (2.8)

고용보험동향

<표 3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 특성별 현황(1999년 하반기)

(단위: 명, %)

구분	성 별		연 령 별									
	남자	여자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88,391 (64.7)	48,185 (35.3)	75 (0.1)	7,309 (5.4)	28,964 (21.2)	42,616 (31.2)	28,786 (21.1)	22,657 (16.6)	6,169 (4.5)			
지 역 별						금 여 기 초 임 금 일 액 별						
서울 강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라	대전 충청	2만원 미만	2~3 만원	3~4 만원	4~5 만원	5~6 만원	6~7 만원	7만원 이상
36,698 (26.9)	26,539 (19.4)	13,667 (10.0)	34,153 (25.0)	13,747 (10.1)	11,772 (8.6)	9,103 (6.7)	32,911 (24.1)	30,481 (22.3)	21,506 (15.7)	14,816 (10.8)	18,340 (13.4)	9,419 (6.9)
사 업 장 규 모 별												
5인 미만	5~ 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건설공사	자발적 이직	폐업도산 공사종단		
20,834 (15.3)	15,037 (11.0)	26,674 (19.5)	25,256 (18.5)	18,721 (13.7)	7,610 (5.6)	5,967 (4.4)	12,678 (9.3)	3,799 (2.8)	9,144 (6.7)	1,0624 (7.8)		
상 실 사 유 별						학 력 별						
경영상 필요	휴업, 체불,이 전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	기타	초졸	중졸	고졸	전문 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15,136 (11.1)	7,709 (5.6)	77,346 (56.6)	3,475 (2.5)	12,441 (9.1)	731 (0.5)	7,068 (5.2)	13,901 (10.2)	71,227 (52.2)	16,561 (12.1)	26,607 (19.5)	1,212 (0.9)	

자료: 고용보험 DB.

<표 35> 실업급여 신청자 및 인정자 추이

(단위: 명, %)

구 분	상실자수		처리현황			상실자수 대비 신청률
	비자발적 상실자 비율	신청자수	인정자수	불인정자수		
1997 상반기	730,915	-	20,390(100.0)	20,039(98.3)	351(1.7)	2.8
1997 하반기	661,627	14.1	30,627(100.0)	30,273(98.8)	354(1.2)	4.6
1998 상반기	1,016,431	32.7	199,092(100.0)	197,299(99.1)	1,793(0.9)	19.6
1998 하반기	967,257	30.5	239,373(100.0)	236,900(99.0)	2,773(1.0)	24.8
1999 상반기	1,176,637	28.4	189,582(100.0)	187,994(99.2)	1,588(0.8)	16.1
1999 하반기	1,323,525	25.8	138,372(100.0)	137,226(99.2)	1,146(0.8)	10.5
1999. 7.	222,624	29.7	29,901(100.0)	29,716(99.4)	185(0.6)	13.4
8.	233,570	25.1	23,648(100.0)	23,488(99.3)	160(0.7)	10.1
9.	208,617	25.8	22,519(100.0)	22,291(99.0)	228(1.0)	10.8
10.	230,169	22.4	20,237(100.0)	20,062(99.1)	175(0.9)	8.8
11.	223,535	24.1	22,086(100.0)	21,872(99.0)	214(1.0)	9.9
12.	204,510	30.6	19,981(100.0)	19,797(99.1)	184(0.9)	9.8

주: 처리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안은 실업급여 신청자수 대비 비율임.
자료: 노동부.

가. 실업급여 신청자 현황

1) 성별·연령계층별 실업급여 신청자
 실업급여 신청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64.7%(89,575명), 여자가 35.3%(48,797명)로 1999년 상반기의 남녀 비율(67.6 대 32.4)에 비해 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1999년 12월말 현재 상실자의 비율

(남자 65.6%, 여자 34.4%)과 비교해 보아도 여자의 실업급여 신청률이 남자의 신청률보다 약간 높다. 이러한 현상은 1998년 10월에 시행된 전사업장으로의 고용보험 적용확대 이래 점점 명백해지는 것으로서 소규모 사업장에 여자 피보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연령계층별 분포는 30세 미만이 31.2%

〈표 36〉 성별·연령계층별 실업급여 신청자 추이

(단위: 명, %)

구 분	전 체	성 별		연 령 별				
		남 자	여 자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997 상반기	20,390 (100.0)	15,426 (75.6)	4,964 (24.4)	1,959 (9.6)	4,537 (22.3)	5,558 (27.3)	6,927 (34.0)	1,409 (6.9)
1997 하반기	30,627 (100.0)	22,534 (73.6)	8,093 (26.4)	3,604 (11.8)	7,926 (25.9)	8,384 (27.4)	9,236 (30.2)	1,477 (4.8)
1998 상반기	199,092 (100.0)	139,687 (70.2)	59,405 (29.8)	44,366 (22.3)	59,213 (29.7)	48,122 (24.2)	42,585 (21.4)	4,806 (2.4)
1998 하반기	239,373 (100.0)	165,593 (69.2)	73,780 (30.8)	75,184 (31.4)	74,595 (31.2)	47,542 (19.9)	31,365 (13.1)	4,817 (2.0)
1999 상반기	189,582 (100.0)	128,192 (67.6)	61,390 (32.4)	56,739 (29.9)	52,920 (27.9)	38,354 (20.2)	35,988 (19.0)	5,581 (3.0)
1999 하반기	138,372 (100.0)	89,575 (64.7)	48,797 (35.3)	44,396 (32.1)	41,178 (29.8)	26,528 (19.2)	22,660 (16.4)	3,610 (2.6)
1999. 7.	29,901 (100.0)	19,855 (66.4)	10,046 (33.6)	8,234 (27.6)	9,007 (30.1)	6,299 (21.1)	5,531 (18.5)	830 (2.8)
8.	23,648 (100.0)	15,406 (65.1)	8,242 (34.9)	7,476 (31.6)	6,996 (29.6)	4,462 (18.9)	4,087 (17.3)	627 (2.7)
9.	225,819 (100.0)	14,709 (65.3)	7,810 (34.7)	7,496 (33.3)	6,731 (19.9)	4,257 (18.9)	3,483 (15.5)	552 (2.5)
10.	20,237 (100.0)	12,989 (64.2)	7,248 (35.8)	6,828 (33.8)	5,940 (29.4)	3,708 (18.3)	3,199 (15.8)	562 (2.8)
11.	22,086 (100.0)	14,112 (63.9)	7,974 (36.1)	7,635 (47.1)	6,542 (29.6)	4,020 (18.2)	3,348 (15.2)	541 (2.4)
12.	19,981 (100.0)	12,504 (62.6)	7,477 (37.4)	9,600 (48.0)	5,962 (29.8)	3,782 (18.9)	3,012 (15.1)	498 (2.5)
1999년 6월 현재 피보험자수	5,844,018 (100.0)	4,112,103 (70.4)	1,731,915 (29.6)	2,155,952 (36.9)	1,992,872 (34.1)	1,122,467 (19.2)	523,783 (9.0)	48,944 (0.8)
피보험자 대비 신청자 비율	2.4	2.2	2.8	2.1	2.1	2.4	4.3	7.4

자료: 노동부.

로 가장 많으며, 30~39세 연령층이 29.8%, 40~49세 미만이 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6 참조). 1999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30대 이하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50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실업급여 신청자수를 1999년 6월말 현재 피보험자수로 나눈 비율을 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으며, 연령계층별로는 30대 이하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 실업급여 신청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2)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청자

1999년 하반기의 실업급여 신청자의 이직사유 분포를 살펴보면, 권고사직이 56.5%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용조정 11.0%, 폐업·도산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사유를 합친 경영사정으로 인한 이직의 비율은 IMF 구제금융시기의 충격이 가시화된 1998년 상반기에 85%로 정점에 이른 이후 감소하여 1999년에는 75% 정도로 누그러진 채 유지되고 있다. 특히 폐업·도산의 경우 그 비중이 1998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3) 지역별 실업급여 신청자

〈표 38〉에 의하면, 1999년 하반기의 지역별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서울·강원, 인천·경기, 부산·경남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하반기 실업급여 신청자수를 1999년 6월말 현재 피보험자수로 나눈

〈표 37〉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청자 추이

(단위: 명, %)

구 분	1997년 하반기	1998년 상반기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1999. 7.	8.	9.	10.	11.	12.	
전 체	30,627 (100.0)	199,092 (100.0)	239,373 (100.0)	189,582 (100.0)	138,372 (100.0)	29,901 (100.0)	23,648 (100.0)	22,519 (100.0)	20,237 (100.0)	22,086 (100.0)	19,981 (100.0)	
정년퇴직	2,553 (8.3)	6,629 (3.3)	4,567 (1.9)	7,210 (3.8)	10,051 (7.3)	1,055 (3.5)	665 (2.8)	502 (2.2)	2,231 (11.0)	2,550 (11.5)	3,048 (15.3)	
경 영 사 정	소계	22,294 (72.7)	169,719 (85.2)	193,388 (80.8)	141,204 (74.5)	104,031 (75.2)	23,499 (22.6)	18,131 (17.4)	16,624 (16.0)	15,091 (14.5)	16,512 (15.9)	14,174 (13.6)
	고용 조정	3,664 (12.0)	35,044 (17.6)	45,766 (23.7)	35,211 (18.6)	15,217 (14.6)	3,192 (10.7)	2,767 (11.7)	2,657 (11.8)	2,237 (11.1)	2,455 (11.1)	1,909 (9.6)
	폐업 도산	7,763 (25.3)	31,379 (15.8)	30,959 (16.0)	13,554 (7.1)	10,700 (10.3)	2,104 (7.0)	1,789 (7.6)	1,631 (7.2)	1,963 (9.7)	1,476 (6.7)	1,737 (8.7)
	권고 사직	10,867 (35.5)	103,296 (51.9)	116,663 (60.3)	92,439 (48.8)	78,114 (75.1)	18,203 (60.9)	13,575 (57.4)	12,336 (54.8)	10,891 (53.8)	12,581 (57.0)	10,528 (52.7)
기 타	5,780 (18.9)	22,744 (11.4)	41,418 (17.3)	41,168 (21.7)	24,290 (17.6)	5,347 (17.9)	4,852 (20.5)	5,393 (23.9)	2,915 (14.4)	3,024 (13.7)	2,759 (13.8)	

자료: 노동부.

〈표 38〉 지역별 실업급여 신청자 추이

(단위: 명, %)

구 분	전 체	서울 강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라	대전 충청
1996	10,133 (100.0)	1,490 (14.7)	1,889 (18.6)	2,287 (22.6)	2,592 (25.6)	863 (8.5)	1,012 (10.0)
1997	51,017 (100.0)	10,538 (20.7)	11,078 (21.7)	7,812 (15.3)	11,368 (22.3)	5,441 (10.7)	4,780 (9.4)
1998년 상반기	199,092 (100.0)	52,736 (26.5)	36,603 (18.4)	20,835 (10.5)	56,809 (28.5)	14,614 (7.3)	17,495 (8.8)
1998년 하반기	239,373 (100.0)	65,913 (27.5)	41,426 (17.3)	23,329 (9.7)	68,147 (28.5)	19,273 (8.1)	21,285 (8.9)
1999년 상반기	189,582 (100.0)	53,545 (28.2)	32,987 (17.4)	19,251 (10.2)	49,454 (26.1)	18,068 (9.5)	16,281 (8.6)
1999년 하반기	138,372 (100.0)	37,135 (26.8)	26,923 (19.5)	13,789 (10.0)	34,285 (2.5)	14,111 (10.2)	12,129 (8.8)
1999. 7.	29,901 (100.0)	7,805 (26.1)	5,371 (18.0)	3,260 (10.9)	7,136 (23.9)	3,506 (11.7)	2,823 (9.4)
8.	23,648 (100.0)	6,781 (28.7)	4,291 (18.1)	2,327 (9.8)	5,912 (25.0)	2,247 (9.5)	2,090 (8.8)
9.	22,519 (100.0)	5,895 (26.2)	4,480 (19.9)	2,217 (9.8)	5,359 (23.8)	2,460 (10.9)	2,108 (9.4)
10.	20,237 (100.0)	5,398 (26.7)	4,044 (20.0)	1,907 (9.4)	5,471 (27.0)	1,853 (9.2)	1,564 (7.7)
11	22,086 (100.0)	5,783 (26.2)	4,618 (20.9)	2,315 (10.5)	5,396 (24.4)	2,177 (9.9)	1,797 (8.1)
12	19,981 (100.0)	5,473 (27.4)	4,119 (20.6)	1,763 (8.8)	5,011 (25.1)	1,868 (9.3)	1,747 (8.7)
1999년 6월말 현재 지역별 피보험자 비율	5,844,018 (100.0)	2,187,851 (37.4)	941,759 (16.1)	546,409 (9.4)	1,244,496 (21.3)	462,669 (7.9)	460,834 (7.9)
피보험자 대비 신청자 비율	2.4	1.7	2.9	3.8	2.3	3.0	2.6

자료: 노동부.

비율을 보면 서울·강원 지역의 비율은 평균 이하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는데 비해 광주·전라와 부산·경남 그리고 인천·경기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26) 실업급여 지급의 세부 분석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고용보험 DB의 원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1999년 7~12월의 실업급여 수급자 중 missing case를 제외한 136,57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다(표 39 참조). 실업급여의 월평균 지급인원은 1999년 하반기 168천명에서 117천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추세는 1999년 3월 이래 지속되고 있다.

실업급여의 사업내용에 따른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구직급여가 3,735억원으로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의 97.1%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조기재취직수당으로 99억원, 상병급여로 13억원이 지급되었다.

〈표 39〉 실업급여 지급추이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1997년 하반기	1998년 상반기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1999. 7.	8.	9.	10.	11.	12.
지 급 총 액	48,696	270,867	522,080	551,403	384,782	77,195	72,337	68,047	60,119	55,868	51,216
지 급 인 원	12,553	73,818	152,976	1,008,419	702,501	134,712	128,701	122,762	111,984	104,742	99,600
구 직 급 여	47,267	264,478	512,361	537,797	373,511	75,082	70,363	66,185	58,284	54,068	49,529
취직촉진수당	1,317	6,071	9,043	12,301	12,301	2,218	2,008	2,026	1,987	1,907	2,155
조기재취직수당	1,311	6,065	9,033	12,292	9,933	1,874	1,726	1,618	1,603	1,603	1,509
상 병 급 여	113	318	676	1,306	1,334	238	248	243	231	196	178

주: 상병급여의 경우, 2주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시작되는 실업인정기간 중 질병·부상 등 부득이하게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이 7일 미만인 때에는 진단서의 제출로 그 기간을 실업으로 인정받아 기본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7일 이상 장기기간인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병급여청구서」에 수급자격자증과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자료: 노동부.

(그림 23) 실업급여의 지급인원 및 지급총액 추이

1) 업종별 실업급여 지급실적

1년간의 보험료 대비 지급액을 통해 업종별 또는 사업장규모별로 상대적인 실업급여 활용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인원측면에서의 상대적 활용정도를 보기 위해 전년도 말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실업급여 수급자수를 비교하며, 금액측면에서의 상대적 활용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당해 연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비교하였다.

〈표 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원측면에서 살펴본 1999년 실업급여의 상대적 활용정도는 전산업 평균 6.1%이며, 건설업(10.0

%), 농업·수렵업 및 임업·어업(9.6%), 광업(9.4%)에서 높게 나타났고,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운수·창고 및 통신업(4.2%)이 가장 낮았다. 금액측면에서는 전산업 평균이 92.3%로 나타났는데, 금융 및 보험업이 145.1%, 광업이 143.2%로 가장 높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숙박 및 음식업이 76.5%로 가장 낮았다.

1999년 실업급여의 상대적 활용정도를 1998년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는데, 피보험자수 대비 수급자수 비율은 약 4%,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은 약 46% 줄었다.

〈표 40〉 업종별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지급현황(1999년)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1998년 12월말 피보험자수(A)	1999년 보험료(B)	1999년 실업급여 수급자수(C)	1999년 지급액(D)	1999년 피보험자수 대비 수급자수(C/A)	1999년 보험료 대비 지급액(D/B)
전 산업	5,267,658 (100.0)	1,014,072 (100.0)	323,418 (100.0)	936,185 (100.0)	6.1	92.3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16,579 (0.3)	3,031 (0.3)	1,599 (0.5)	3,410 (0.4)	9.6	112.5
광업	17,670 (0.3)	3,512 (0.3)	1,665 (0.5)	5,028 (0.5)	9.4	143.2
제조업	2,224,705 (42.2)	404,696 (39.9)	111,297 (34.4)	345,697 (36.9)	5.0	85.4
건설업	364,757 (6.9)	99,284 (9.8)	36,607 (11.3)	97,777 (10.4)	10.0	98.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 ·숙박·음식업	614,582 (11.7)	111,972 (11.0)	39,711 (12.3)	85,639 (9.1)	6.5	76.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582,796 (11.1)	102,203 (10.1)	24,449 (7.6)	89,321 (9.5)	4.2	87.4
금융 및 보험업	378,494 (7.2)	101,520 (10.0)	26,922 (8.3)	147,335 (15.7)	7.1	145.1
사업·개인 및 기타 공공서비스업	1,068,075 (20.3)	187,855 (18.5)	78,279 (24.2)	161,964 (17.3)	7.3	86.2

자료: 고용보험 DB.

2) 사업장규모별 실업급여 지급실적
 사업장규모별로는 30~99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이 피보험자수 대비 실업급여 지급자수 비율에 있어 8.2%로 가장 높았으나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지급액 비율은 6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용안정도가 낮은 소규모 사업장,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들이 1999년 4월부터 피보험단위 기간을 충족하고 이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원측면의 활용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금액측면의 활용정도는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3) 급여기초임금일액별 실업급여 지급 실적

급여기초임금일액²⁷⁾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말하는데, 일액이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다.²⁸⁾ 1999년 하반기의 분석인

〈표 41〉 사업장규모별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지급현황(1999년)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1998년 12월말 피보험자수(A)	1999년 보험료 ¹⁾ (B)	1999년 실업급여 수급자수(C)	1999년 지급액(D)	1999년 피보험자수 대비 수급자수(C/A)	1999년 보험료 대비 지급액(D/B)
전 체	5,267,658 (100.0)	1,006,057 (100.0)	323,418 (100.0)	936,185 (100.0)	6.1	93.1
30인 미만	1,555,479 (29.5)	278,111 (27.6)	127,628 (39.5)	191,208 (20.4)	8.2	68.8
30~99인	940,722 (17.9)	146,846 (14.6)	64,616 (20.0)	177,700 (19.0)	6.9	121.0
100~299인	889,132 (16.9)	145,661 (14.5)	47,379 (14.6)	157,627 (16.8)	5.3	108.2
300~499인	332,058 (6.3)	64,185 (6.4)	19,032 (5.9)	73,135 (7.8)	5.7	113.9
500~999인	391,088 (7.4)	81,442 (8.1)	18,370 (5.7)	80,679 (8.6)	4.7	99.1
1,000인 이상	1,159,179 (22.0)	289,812 (28.8)	46,393 (14.3)	255,837 (27.3)	4.0	88.3

주 : 1) 상시근로자수 정보가 누락된 사업장이 제외되어 사업장규모별로 구분된 본 표는 업종별로 구분된 앞의 표에 비해 보험료총액이 적게 집계됨.

자료 : 고용보험 DB.

27)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하며, 기초일액이 이직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일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법 제 35조 제2항). 1999년 9월 1일~2000년 8월 31일 기간의 최저임금은 일급 12,800원, 시급 1,600원으로 고시되어 있다. 최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할 경우 이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의 70%이다(2000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의 90%로 상향조정되었다).

2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 1999년 7월 이직자부터는 6만원이 상한선이다.

원 총 136,576명의 평균 급여기초임금일액은 41,002원이다. 하반기의 임금일액별 분포를 보면, 2~4만원 미만인 경우가 46.4%이고 6만원 이상인 경우는 20.3%인데 비해 상반기에는 5만원 이상인 경우가 41.4%이고 6만원 이상인 경우도 39.7%에 이르렀다. 이렇게 급여기초임금일액이 감소한 원인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의 구성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임금수준이 낮은 9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이직자 비중이 상반기에는 15.7%이던 것이 하반기에는 26.3%로 높아진 반면, 임금수준이 높은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이직자 비중은 18.3%에서 9.3%로 낮아졌다(사업장규모별 평균임금 격차는 부표 39 참조).

성별에 따른 임금일액의 경우 남자는 3만원 이상이 전체의 약 83%인데 비해 여자는 3만원 이상이 전체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의 임금수준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 급여기초임금일액의 분포를 보면, 20세 미만의 경우 3만원 미만이 90.7%, 20~24세의 경우 2~4만원 미만이 75.8%, 25~29세의 경우 2~4만원 미만이 70.3% 등으로 저연령대가 낮은 임금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40~49세의 경우가 가장 높은 임금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약 50%가 5만원 이상에 분포하고 있다. 이를 199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저임금대에서의

〈표 42〉 성별 급여기초임금일액 분포(1999년)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2만원 미만		2~3만원 미만		3~4만원 미만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전 체	186,903 (100.0)	136,576 (100.0)	9,157 (4.9)	9,103 (6.7)	35,543 (19.0)	32,911 (24.1)	35,710 (19.1)	30,481 (22.3)	
성 별	남 자	126,329 (100.0)	88,391 (100.0)	2,052 (1.6)	2,048 (2.3)	15,416 (12.2)	13,215 (15.0)	22,677 (18.0)	18,992 (21.5)
	여 자	60,574 (100.0)	48,185 (100.0)	7,105 (11.7)	7,055 (14.6)	20,127 (33.2)	19,696 (40.9)	13,033 (21.5)	11,489 (23.8)
구 분	4~5만원 미만		5~6만원 미만		6~7만원 미만		7만원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전 체	28,972 (15.5)	21,506 (15.7)	21,899 (11.7)	14,816 (10.8)	15,353 (8.2)	18,340 (13.4)	40,269 (21.5)	9,419 (6.9)	
성 별	남 자	21,589 (17.1)	16,943 (19.2)	17,394 (13.8)	12,887 (14.6)	12,146 (9.6)	17,109 (19.4)	46,823 (28.7)	7,197 (8.1)
	여 자	7,383 (12.2)	4,563 (9.5)	4,505 (7.4)	1,929 (13.0)	3,207 (5.3)	1,231 (2.6)	6,006 (8.2)	2,222 (4.6)

자료 : 고용보험 DB.

비중이 높아지고 고임금대에서는 낮아졌을 수 있다. 한편 1999년 하반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고 있는 구직급여일액²⁹⁾은 평균 20,501원으로 상반기의 23,091원에 비해 약 2,500원 낮아졌다. 구직급여일액의 주요 사

〈표 43〉 연령별 급여기초임금일액 분포(1999년)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2만원 미만		2~3만원 미만		3~4만원 미만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20세미만		75 (100.0)		26 (34.7)		42 (56.0)		4 (5.3)
20~24세	42,327 (100.0)	7,309 (100.0)	1,651 (2.2)	1,130 (15.5)	14,235 (33.6)	3,797 (51.9)	13,169 (31.1)	1,749 (23.9)
25~29세		28,964 (100.0)		1,924 (6.6)		10,621 (36.7)		9,720 (33.6)
30~39세	56,956 (100.0)	42,616 (100.0)	1,250 (2.2)	1,531 (3.6)	5,834 (10.2)	6,236 (14.6)	11,012 (19.3)	9,557 (22.4)
40~49세	40,418 (100.0)	28,786 (100.0)	1,975 (4.9)	1,669 (5.8)	4,917 (12.2)	4,452 (15.5)	4,733 (11.7)	4,315 (15.0)
50~59세		22,657 (100.0)		2,038 (9.0)		5,424 (23.9)		3,955 (17.5)
60세이상	47,202 (100.0)	6,169 (100.0)	3,881 (8.2)	785 (12.7)	10,557 (22.4)	2,339 (37.9)	6,796 (14.4)	1,181 (19.1)
구 분	4~5만원 미만		5~6만원 미만		6~7만원 미만		7만원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년 하반기
20세미만		3 (4.0)		-		-		-
20~24세	7,373 (17.4)	523 (7.2)	3,426 (8.1)	85 (1.2)	1,471 (3.5)	23 (0.3)	602 (1.4)	2 (0.0)
25~29세		4,344 (15.0)		1,634 (5.6)		644 (2.2)		77 (0.3)
30~39세	12,318 (21.6)	9,314 (21.9)	10,025 (17.6)	7,113 (16.7)	6,907 (12.1)	6,873 (16.1)	9,610 (16.9)	1,992 (4.7)
40~49세	4,910 (12.1)	4,090 (14.2)	4,963 (12.3)	3,667 (12.7)	4,184 (10.4)	6,540 (22.7)	14,736 (36.5)	4,053 (14.1)
50~59세		2,668 (11.8)		1,958 (8.6)		3,733 (16.5)		2,881 (12.7)
60세이상	4,371 (9.3)	564 (9.1)	3,485 (7.4)	359 (5.8)	2,791 (5.9)	527 (8.5)	15,321 (32.5)	414 (6.7)

주 : 1999년 하반기부터 3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연령계층이 세분됨.
자료 : 고용보험 DB.

29) 구직급여일액은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이며,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이직전 직장에서의 평균임금과 같다. 그러나 평균임금이 7만원을 초과할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은 7만원으로 한다(1999년 7월 이직자부터는 각각 6만원).

항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부표 38 참조).

성별 평균 구직급여일액은 남자가 22,935원, 여자가 16,036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임금 역시 남자는 52,080원, 여자는 33,134원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연령(남자 41.1세, 여자 34.4세)을 감안하더라도 구직급여일액과 마찬가지로 성별 격차가 큰 것이다.

남자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44.0%이고, 여자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48.4%로 나타나 이직당시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이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 이상인 수급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이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에 대한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³⁰⁾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여자의 소득대체율이 남자의 소득대체율보다 높다. 또한 1999년 하반기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임금 수준이 낮아진 것을 반영하듯 전체 소득대체율도 상반기의 42.9%보다 높은 45.2%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구직급여일액은 남자의 경우 40대가 25,74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자는 30대가 17,99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자의 경우는 40대와 50대 연령층

의 경우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각각 42.3%와 39.3%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연령계층에 평균임금이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 이상인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¹⁾

사업장규모별로는 대체로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구직급여일액도 커짐을 알 수 있는데, 다만 300~499인 규모에서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은 32,800원인데 비해 300~499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68,429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6%로 나타났고 300~499인 사업장에서는 39.6%로 나타나 최고 10%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직한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이 크게 나타났다.

구직급여일액 수준을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가 26,034원으로 가장 높으며,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복지행정의 경우가 25,793원으로 그 다음으로 높다. 반대로 교육서비스업이 14,671원으로 가장 낮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16,753원으로 그 다음으로 낮았다.

30) 실업급여 소득대체율(%)=(구직급여일액÷이직전 평균임금)×100.

31)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이유는 이직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이 7만원 이상일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만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1999년 7월 이직자부터는 각각 6만원).

4) 실업급여 수급종료자에 대한 평균 지급액 및 평균지급 일수³²⁾
 1999년 하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실업급여 수급종료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평균 지급액과 평균 지급일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업급여 수급종료자를 정의하기 위해 수급기간의 만료여부, 실업급여의 소진여부, 취업여부 등 3가지의 판단기준으로 구분하여 총 8개의 분류가 이루어졌다.³³⁾
 이러한 분류에 따른 1999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 323,418명 중에서 12월말 현재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종료자는 66.6%(215,411명)이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33.4%(108,0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종료자의 평균 지급액과 평균 지급일수를 살펴보면,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은 2,389천원이며, 평균 지급일수는 103.3일이었다(표 44 참조).³⁴⁾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평균 구직급여액은 20세 미만 이 688천원으로 가장 낮았고 연령이 높아짐

〈표 44〉 실업급여 수급종료자에 대한 평균 지급액 및 지급일수(1999년 하반기)

(단위 : 원, 일, 명)

구 분	평균 구직급여액	평균 지급일수	인 원
전 체	2,388,536	103.31	215,411
20세 미만	687,801	62.35	31
20~24세	1,045,574	74.11	9,536
25~29세	1,536,681	91.81	41,381
30~39세	2,393,728	103.95	65,654
40~49세	2,760,046	109.71	47,416
50~59세	3,087,660	128.36	39,684
60세 이상	2,594,301	145.48	11,709

32) 1999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들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60일에서 210일이며(2000년 1월 1일부터는 90일에서 240일로 30일씩 증가함), 1999. 7. 1.~12. 31.에 적용되는 제3차 특별연장급여제도의 시행으로 수급종료일로부터 60일간 구직급여일액의 70%를 더 지급받을 수 있었다.

33)

구 분	수급기간내		수급기간 만료	
	취 업	미취업	취 업	미취업
실업급여 소진	수급자격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실업급여 미소진	비해당	해당	비해당	비해당

주 :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후 10개월 이내로 되어 있으며, 실업급여 소진이란 실업급여 인정일수와 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훈련·개별·특별연장급여일수)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34) 1999년 상반기의 경우 평균 지급액은 2,644천원, 평균 지급일수는 118.1일이었다.

에 따라 상승하다 50대의 3,088천원을 정점으로 다시 낮아졌다. 평균 지급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증가하도록 설계한 소정급여일수 규정을 반영하여 20세 미만이 62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60세 이상이 145일로 가장 길었다. 지급일수에는 1998년 7월 15일 이래 1999년 말까지 계속해서 시행된 특별연장급여제도로 인해 증가된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

5) 재취업자 현황

재취업자를 분석함에 있어 횡단적(cross-sectional)인 관측방법은 한 시점에서의 현상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보만을 얻을 뿐이다. 그러나 일정시점에 수급을 시작한 수급동기(cohort)를 일정기간

추적하면서 관측하는 종단적(longitudinal) 관측방법은 진행과정을 알 수 있어 추이를 파악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본 호에서는 1999년 봄호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초인정일을 기준으로 한 수급동기의 노동이동을 통해 1999년 1월~12월 사이에 다시 고용보험 사업장에 취업한 피보험자격 재취득자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45〉에서와 같이 분석대상 수급자 317,985명 중 23.6%인 총 74,962명이 고용보험 사업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보험 통계에 잡힌 재취득자수는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어서 수급자 중 자영업을 시작하였거나 비적용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까지를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표 45〉 수급동기별 재취득률 및 재취득 소요기간(1999년)

(단위: 명, 일, %)

구 분	수급자수	재 취 득 자		재취득 소요기간	재취득률
			조기재취득자		
전 체	317,985	74,962	19,777	135	23.6
1999. 1.	25,217	8,494	1,603	180	33.7
2.	37,608	11,420	2,385	172	30.4
3.	26,779	8,733	1,979	159	32.6
4.	29,801	9,184	2,202	149	30.8
5.	31,639	8,257	2,140	131	26.1
6.	26,262	6,883	1,987	121	26.2
7.	28,251	6,181	1,925	110	21.9
8.	25,847	5,120	1,817	101	19.8
9.	24,663	4,552	1,818	85	18.5
10.	19,177	2,825	1,130	73	14.7
11.	21,511	2,161	676	61	10.0
12.	21,230	1,152	115	49	5.4

인원이 재취업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지난 호에서 분석했던 1998년 7월~1999년 6월 기간과 비교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재취득률은 당시의 24.8%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2% 낮아졌으며 평균 재취득 소요기간은 152일에 비해 17일 정도 짧아졌다.

Ⅲ. 1999년도 고용보험 기금운용 실적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료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징수금(가산금, 연체료 등), 적립금, 기금운영수익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조성된다. 1999년도의 고용보험기금 조성실적은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71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이 중 고용보험료 수입이 16,447억원으로 총 조성금액의 83.2%를 차지하였고, 이자수입이 2,496억원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고용보험 3개사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고용안정사업부문의 총수입이 3,732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부문 5,217억원, 실업급여부문 10,822억원으로 각각 전체 기금 조성액의 18.9%, 26.4%, 54.7%를 차지하였다.

고용보험료 수입액 16,447억원을 비용부담 주체별로 구분할 때 사업주가 11,036억원(67.1%)을 부담하였고, 5,411억원(32.9%)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실업급여의 지

<표 46> 1999년도 고용보험 기금운용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전 체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수입	고 용 보 험 료	1,644,731(83.19)	306,531	401,457	936,743
	가 산 금	1,251(0.06)	248	225	778
	연 체 료	5,811(0.29)	1,119	1,077	3,615
	이 자 수 입	249,561(12.62)	63,638	50,162	135,761
	기 타 잡 수 입	8,820(0.45)	1,579	1,967	5,274
	용 자 금 회 수	10,625(0.54)	94	10,531	
	직업훈련촉진 기금전입액	56,277(2.85)		56,277	
	소 계	1,977,076 (100.00)	373,209 (18.88)	521,696 (26.39)	1,082,171 (54.73)
지출	보 험 사 업 비 용	1,684,912(99.3)	200,867	525,150	958,895
	반 환 금	10,883(0.6)	1,386	5,398	4,099
	운 영 경 비	988(0.1)	343	477	168
	소 계	1,696,783(100)	202,596(11.94)	531,025(31.30)	963,162(56.76)
수지차	적 립 금	280,293(100)	170,613(60.87)	△9,329(△3.33)	119,009(42.46)

자료 : 노동부.

급, 보험료의 반환, 기타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는데, 총 16,968억원이 지출되어 1998년에 비하여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고용안정사업부문에 지출된 금액은 2,026억원으로 1998년에 비해 916억원 가량 증가를 보여 고용안정사업부문 수입액의 54.3%를 차지하였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의 총지출액은 5,310억원으로 1998년에 비해 2,602억원 가량 증가를 보여 수입액의 101.8%를 지출하였다. 그리고 실업급여부문의 경우 지출액이 9,632억원으로 실업급여부문 수입액의 89.0%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도의 총지출액은 16,968억원으로 1998년까지의 적립금 21,704억원과 1999년의 수지차 2,803억원을 합한 24,507억원이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용보험제도 주요 개선내용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1999. 8. 9. 노동부령 제153호) 개정

가. 개정배경 및 개요

동 시행규칙 개정은 1999. 7. 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³⁵⁾ 간략히 소개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의 주내용은 실업감소

및 장기실업 방지 등을 위한 각종 장려금의 신설 및 지급요건의 완화, 그리고 고용보험 관련업무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었는 바, 시행규칙은 이러한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후술하듯이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2000. 2. 9. 대통령령 제16705호)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은 올 상반기 중 다시 한번 개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동 시행규칙의 전체적인 변경내용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신규조문 대비 표에 맡기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간략히 주요 내용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나. 주요 개정내용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월 1인 이상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로 확대하되 단기계약자를 고용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령 제19조), 비상근촉탁근로자 또는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자를 채용하는 경우를 채용장려금의 지급제외대상으로 명시하였다(규칙 제26조 신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2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재고용장려금이 신설됨

35)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고용보험동향』(1999년 가을호) 참조.

에 따라(령 제19조의 2)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사본, 재고용된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규칙 제27조의 5 신설)

③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령 제22조의 2) 그 지급대상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정하고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정하였다(규칙 제32조의 5 및 제32조의 6 신설).

④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 개산보험료의 징수·감액조정 및 확정보험료의 징수 등 고용보험 관련업무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됨에 따라(령 제5조 이하)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규칙 제6조, 제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

2.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2000. 2. 9. 대통령령 제16705호) 개정

가. 개정배경 및 개요

지난해 가을 이후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각각 1999. 12. 31.과 2000. 2. 9.에 개정되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그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장기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는 한편, 저소득 실직자의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그 주된 초점이 있었다. 또한 조기채취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고용보험의 고용촉진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별연장급여의 실업부조적 성격도 강화하였다. 또한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한 사업주의 부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추가징수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근로자의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제도남용을 방지하되 제재규정의 합리화를 도모하였다. 나아가 각종 개념규정을 명확히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을 일단위로 변경함으로써 절차의 간이성을 도모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2000. 4. 1. 이후 시행됨이 원칙이나 최저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의 상향조정된 내용은 2000. 1. 1. 이후 시행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외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하여 고용보험의 고용안정기능을 강화하고,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장려금의

지급을 합리화하는 데도 개정의 이유가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한도 및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한을 확대하면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액과 고용촉진장려금액 등의 최고한도가 설정되었다. 나아가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자에 대한 비용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도 확대하였다.

이하에서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을 함께 서술하는 것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언급하기로 한다.

나. 세부 개정내용

1) '수급요건'의 명확화와 완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종전 '수급자격'이라는 용어 대신 '수급요건'으로 대체하여 구직급여는 실업상태,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급받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법 제31조). 동시에 이러한 수급요건을 종전에는 이직일 이전 18월(기준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2월 이상일 것을 요구하던 것에서 180일 이상이라는 일단위 계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수급요건의 완화효과도 도모하였다(동조).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법 제31조) - 이직전 18월 중 12월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법 제31조) - 이직전 18월 중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수급요건으로 대체하여 구직급여가 실업상태에서 지급받는 것임을 분명히 함. □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일단위로 변경하고 완화함.

2)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을 일단위로 전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서 피보험단위기간산정이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전환(법 제31

조)됨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도 일단위로 전환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산편의를 도모하였다(법 제32조).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단위기간(법 제32조) - 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월씩 구분, 각 1월의 기간 중 임금지급기초일수가 15일은 1월, 10~14일은 2/3, 10일미만은 제외(동조 제1항 내지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단위기간(법 제32조) -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동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일단위로 변경함에 따라 그 산정방법을 변경

<p>-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전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대한 확인이 있었던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의 날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동조 제4항)</p>	<p>-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동조 제2항)</p>
--	--

3) 실업인정 개념 및 절차의 명확화 업인정 절차와 관련하여 개념규정(법 제2조 3의 2호)을 마련하고 수요자가 그 절차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3조의 2 및 제34조, 령 제45조).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실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신설></p>	<p>□ ‘실업의 인정’ 정의규정(법 제2조 3의 2호)</p> <p>-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3조의 2에 의한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p>	<p>□ 실업인정의 개념규정 및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 증진</p>
<p><신설></p>	<p>□ 수급요건의 충족여부 확인 및 통지절차 등(법 제33조의 2)</p> <p>-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신청을 한 경우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함.</p> <p>- 최후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함이 원칙</p>	
<p>□ 실업인정특례자로서 추가된 자(령 제45조 제4호 및 제5호)</p>	<p>□ 심사·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직권에 의해 처분이 취소된 자와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자도 실업인정특례자로 인정</p>	
<p>□ 실업인정 절차에 있어 추가된 사항(법 제34조 제5항 신설)</p>	<p>□ 실업인정시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업소개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p>	

4) 최저구직급여일액의 상향조정 임금의 70%로 하였으나 생계안정을 위하여 90%로 상향조정하였다(법 제36조 제1항)

저소득 실직자의 경우 종전에는 1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최저금액을 최저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 최저구직급여일액(법 제36조 제1항 2호) - 급여기초일액의 100분의 70	□ 최저구직급여일액(법 제36조 제1항 2호) - 급여기초일액의 100분의 90	□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상향조정하여 생계안정기능 강화

5) 구직급여 감액기준의 간소화와 강화
 고용보험법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감액토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그 기준이 소득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구직급여일액의 합계액이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법 개정을 통해 실업인

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을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실제로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으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감액기준을 간소화함과 동시에 강화하였다(법 제38조 제1항). 한편 국민연금 등 또 다른 공제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삭제하였다(동조 제2항,령 제49조의 2 삭제).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 구직급여의 감액기준(법 제38조 제1항)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소득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구직급여일액의 합계액이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 구직급여의 감액대상(법 제38조 제2항,령 제49조의 2) -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또는 특별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연금액의 1일분에 상당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 - 단,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연금액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	□ 구직급여의 감액기준(법 제38조 제1항)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을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실제로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으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삭제>	□ 구직급여의 감액기준을 간소화하면서 동시에 강화함.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구직급여가 연금지급보다 우선함을 인정함.

6) 수급기간 및 최대연장기간의 상향조정 및 신청기간의 합리화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

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월 내라는 수급기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됨이 원칙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이 수급기간을 이직후 12월로 연장하였다(법 제39조). 또한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10월의 수급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동법 개정을 통해 최대연장기간을 4년으로 조정하였다(동조 제2항).

한편 종래에는 수급기간의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사유로 계속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수급기간 내로 통일하여 절차의 간소화를 꾀하였다. 또한 이러한 신청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도 종전 '천재지변 등'에서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 등'까지 확대하였으며, 이 경우 신청기간은 당초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로 하던 것을 30일 이내로 하여 기간초과로 신청하지 못하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령 제51조).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기간(법 제39조) - 10월 □ 수급기간의 최대연장기간(법 제39조 제2항) - 3년 □ 수급기간의 연장신고(령 제52조) - 신청기간: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계속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로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예외: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기간(법 제39조) - 12월 □ 수급기간의 최대연장기간(법 제39조 제2항) - 4년 □ 수급기간의 연장신고(령 제52조) - 신청기간: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사실을 수급기간 내에 신고 - 예외: 천재지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기간과 수급기간 최대연장기간을 각각 연장함으로써 실직자의 수급권 보호 □ 수급기간 연장신고기간의 합리화를 통한 실직자의 수급권 보호

7) 소정급여일수의 상향조정과 피보험기간 산정범위 확대

종전에는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60일에서 210일까지의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실업기간의 장기화 등에 따라 이를 각 30일씩 상향조정하여 최저 90일에

서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41조 제1항, 별표 1).

또한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 다른 적용 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이직전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하던 것을 3년 이내에 재취득한 경

우로 그 산정범위를 확대하였다(동조 제2항)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input type="checkbox"/> 소정급여일수(법 제41조 제1항, 별표1) - 60~210일 <input type="checkbox"/> 이직 1년 이내 피보험자격 취득시 이직 전 고용기간을 피보험기간에 산입(동조 제2항)	<input type="checkbox"/> 소정급여일수(법 제41조 제1항, 별표 1) - 90~240일 <input type="checkbox"/> 이직 3년 이내 피보험자격 취득시 이직 전 고용기간을 피보험기간에 산입(동조 제2항)	<input type="checkbox"/> 소정급여일수의 연장과 피보험기간의 산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기실직자의 생계지원

8) 개별연장급여의 실업부조적 성격 강화
 개별연장급여는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 수급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로서 대통령이 정한 자에게 연장지급되던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동법 개정을 통해 개별연장급여를 취직이 특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실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실업부조적 성격을 강화하였다(법 제42조의 2).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이 특히 어려운 자’는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로 하였다(령 제52조의 2 제1항 제4호 신설). 그리고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 구직급여일수 종료 14일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던 것에서 종료일까지 신고하면 되도록 완화하였다(령 동조 제3항).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input type="checkbox"/> 개별연장급여의 지급(법 제42조의 2) - 대통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해 연장지급 <령 제52조의 2 제1항 제4호 신설> <input type="checkbox"/>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신청기간(령 제52조의 2 제3항) - 구직급여일수 종료 14일 전까지 신청	<input type="checkbox"/> 개별연장급여의 지급(법 제42조의 2) - 대통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연장지급 <input type="checkbox"/>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를 개별연장급여의 지급대상자로 명시 <input type="checkbox"/>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신청기간(령 제52조의 2 제3항)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신청	<input type="checkbox"/> 개별연장급여의 실업부조적 성격 강화

9)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기준을 시행규칙에서 명시
 수급자격 제한기준이 되어온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자
 기사정 유무의 인정기준을 종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한 기준에 의하던 것을 노동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직접 명시하기로 하였다(법 제45조 제2항).

10) 고액금품수령이 확실시되는 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유예
 고용보험법은 이직당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을 퇴직금 등으로 수령한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3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5조의 2). 이를 통해 이직당시 수령한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자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된다(령 제56조의 2).

이번 고용보험 개정을 통해 실업의 신고일 당시 고액금품을 실제 수령하지는 않았더라도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도 구직급여의 지급유예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없앴과 동시에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였다(법 제45조의 2).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령 제56조의 2 제2항 신설).

“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사업, ④ 이직일 이전 최근 1년간 임금채불이 없었던 사업”이 그것이며, 다만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유예대상자(법 제45조의 2) -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령한 자 <령 제56조의 2 제2항 신설>	□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유예대상자(법 제45조의 2) -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령한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 - ① 정부투자기관, ②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사업, ④ 이직일 이전 최근 1년간 임금채불이 없었던 사업” - 당해 사업이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년부터 이직후 실업의 신고일까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	□ 고액금품을 실제 수령한 자뿐만 아니라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까지 포함함으로써 수급자간 형평성 도모

당해 사업이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년부터 이직후 실업의 신고일까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11) 근로자의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완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 직급여 및 취직촉진수당)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종전에는 그 이후 일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제재 방식의 합리화를 도모하였다.

먼저 구직급여와 관련하여서는 실업기간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그 방법이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한 위반행위가 2회 이상 행하지 않는 한 당해 위반행위가 있었던 실업인정

대상기간, 즉 2주간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뿐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다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 47조 제2항).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①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②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행한 구직활동 내용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령 제57조의 2 신설).

또한 취직촉진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신고 의무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의 방법이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한 위반행위가 2회 이상 행해지지 않는 한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법 제54조 제2항).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위 령 제57조의 2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다(령 제67조).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input type="checkbox"/>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제한 (법 제47조) - 당해 급여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날부터 구직급여 지급중지 <제2항 신설> <령 제57조의 2 신설>	<input type="checkbox"/>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제한(법 제47조) - 당해 급여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날부터 구직급여 지급중지 - 실업기간 중 소득신고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의 방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한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 지급중지 <input type="checkbox"/>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①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	<input type="checkbox"/>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여 형평성 도모

<p>□ 부정행위에 따른 취직촉진수당 지급 제한(법 제54조)</p> <p>- 당해 급여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날부터 취직촉진수당 지급중지 <제2항 신설></p>	<p>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또는 ②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행한 구직활동 내용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p> <p>□ 부정행위에 따른 취직촉진수당 지급제한 (법 제54조)</p> <p>- 당해 급여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날부터 취직촉진수당 지급중지</p> <p>- 실업기간 중 소득신고 불이행 또는 허위 신고의 방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한 취직촉진수당 지급</p> <p>□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p> <p>- 령 제57조의 2 준용(령 제67조)</p>
<p><신설></p>	

12)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 완화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던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을 '6월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이로써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법 제50조, 령 제61조)</p> <p>-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p>	<p>□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법 제50조, 령 제61조)</p> <p>-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p>	<p>□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실업의 장기화 방지</p>

13)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한도 확대
종전에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하여 1년 중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동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6월 이내에는 다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의 실업 예방 및 고용촉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80일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라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다시 9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령 제17조의 3 제2항 단서 신설, 동조 제4항 삭제).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p>□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범위(령 제17조의 3)</p> <p>-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수에 대해 지원금 지급(동조 제2항 본문)</p> <p><동조 제2항 단서 신설></p> <p>-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1년 중 180일이 되는 때에는 180일이 되는 날 이후의 6월이 경과해야 재지급 가능</p>	<p>□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범위(령 제17조의 3)</p> <p>-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 중 180일에 달할 때까지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수에 대한 지원금 지급(동조 제2항 본문)</p> <p>- 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중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한 때에는 90일을 한도로 추가지급</p> <p><삭제></p>	<p>□ 고용유지지원금의 추가지급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기능 강화</p>

14)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기한 연장과 지급액의 최고한도 설정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1

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연장함으로써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도록 하였다(령 제22조의 2 제2항). 다만 지급액의 한도는 채용된 근로자별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내로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방지하였다(령 제22조의 2 제5항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p>□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령 제22조의 2)</p> <p>- 지급기간: 6월간(동조 제2항)</p> <p>- 지급액: 임금액의 1/3(대기업 1/4)(동조 제2항)</p> <p><신설></p>	<p>□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령 제22조의 2)</p> <p>- 지급기간: 1년간(동조 제2항)</p> <p>- 지급액: 임금액의 1/3(대기업 1/4)(동조 제2항)</p> <p>근로자별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내</p>	<p>□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되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한도 설정</p>

15) 고용촉진장려금의 최고한도 설정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한도를 채용된 근로자별로 노동

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내로 하여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방지하였다(령 제22조 제5항 신설, 령 제23조 제4항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신설>	<input type="checkbox"/>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한도(령 제22조 제5항 및 령 제23조 제4항) - 근로자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금액 이내	<input type="checkbox"/>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한도 설정

16) 고용안정사업관련 사업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추가징수제도 신설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한 사업주의 부정행위가 적지 않게 되자 종전 반환명령에 의한 제재방식에 더하여 추가징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0조의 2 후단 신설). 이

에 따라 추가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이 사실이 통지되고(령 제26조 제3항 신설) 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령 동조 제4항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input type="checkbox"/> 사업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법 제20조의 2) - 반환명령(동조 전단) <후단 신설>	<input type="checkbox"/> 사업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법 제20조의 2) - 반환명령(동조 전단) -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추가징수 가능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한 사업주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제도남용 억제
<령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input type="checkbox"/> 추가징수 결정을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징수액을 납부하도록 함.	

17) 수감장려금 지원대상의 엄격화
 종전 수감장려금의 지원대상은 '① 사업장의 감원계획·도산·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확실시되는 피보험자, ② 50세 이상의 피보험자, ③ 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

발훈련을 받는 이직예정인 피보험자'였다. 금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상의 지원대상 중 ③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①은 그 지원요건을 강화하였다(령 제30조의 2).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장려금의 지원대상(령 제30조의 2 제1항) - 사업장의 감원계획·도산·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확실시되는 피보험자 - 50세 이상의 피보험자 - 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장려금의 지원대상(령 제30조의 2 제1항) - 사업장의 감원계획·도산·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단,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50세 이상의 피보험자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장려금의 지원대상 엄격화

18)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자에 대한 비용지원제도 신설
 피보험자가 자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식근로자 양성에 필요한 기술자격 취득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령 제30조의 3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령 제30조의 3) -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장려하여 지식근로자 양성에 기여

1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지원을 행하는 대상은 본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를 개

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전부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와 사업주단체는 우대대상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지원범위도 종전에는 시설설치비용에 한정하였던 것을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까지 확대하였다(령 제33조).

고용보험동향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비용지원 (령 제33조)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지원범위: 시설설치비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비용지원 (령 제33조) -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 - 지원범위: 시설설치비용 및 장비구입비용	□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동 제도의 활성화 도모

3. 고용보험제도 관련고시 내용³⁶⁾

◎ 2000년도 기준임금 고시(노동부고시 제1999-41호)

- 기준임금액: 시간급 3,200원, 월급 723,000원 (월 226시간 기준)
- 적용기간: 2000. 1. 1. ~ 2000. 12. 31.

◎ 2000년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등의 고시(노동부고시 제99-40호)

- 고용보험법의 규정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2000년도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 34천만원 미만(단, 1999년도에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어 이월되는 건설공사는 고시금액 미만이라도 적용)
-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 1,546,903원
- 적용기간: 2000. 1. 1. ~ 2000. 12. 31.

36) 고용보험관련 고시내용은 2000. 3. 현재 적용되는 고시내용에 한정하여 수록하였다.